

연구보고서 2006-22-4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선우덕  
김상철  
임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결혼 및 가족의 가치관 변화로 저출산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참고하고, 향후 고령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비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2005년 9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작성된 기본계획이며, 동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할 추진조직체계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요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발표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 및 형태에 대해서 각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원의 선우덕 박사의 책임하에 김상철 박사, 임주연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바쁜 와중에서도 본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김미곤 사회보장연구본부장과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이삼식 저출산정책팀장, 그리고 원고수정 및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준 손숙자 3급 관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 목 차

요 약 .....	11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1
제2절 연구방법 .....	33
제2장 행정조직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	34
제1절 행정조직개편의 판단기준 .....	34
제2절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일반적 절차 .....	40
제3절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	51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사례분석 ...	59
제1절 사례분석 결과의 주요내용 .....	59
제2절 사례분석 결과의 요약 .....	127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개선방안 .....	128
제1절 지방행정조직의 현황 .....	128
제2절 조직체계의 개선방안 .....	155
제5장 결론 .....	160
참고문헌 .....	161
부    록 .....	163

## 표 목 차

〈표 3- 1〉	지자체의 일반적 특성 .....	60
〈표 3- 2〉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 작성 필요도 의식수준 .....	61
〈표 3- 3〉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	63
〈표 3- 4〉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조직 형태 .....	64
〈표 3- 5〉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조직체계의 통합필요성 의식수준 .....	65
〈표 3- 6〉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 조직체계의 구축수준 .....	66
〈표 3- 7〉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 조직체계의 통합방법 .....	67
〈표 3- 8〉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인지수준 .....	68
〈표 3- 9〉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작성여부 .....	69
〈표 3-10〉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미작성 이유 .....	70
〈표 3-11〉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여부 .....	71
〈표 3-12〉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현존 조직 활용이유 .....	72
〈표 3-13〉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향후 구성계획 .....	73

〈표 3-14〉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유형	74
〈표 3-15〉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을 위한 보건소 조직 활용여부	75
〈표 3-16〉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보건소 조직 활용정도	76
〈표 3-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실태(10개 광역 시·도지역의 경우)	78
〈표 3-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실태(22개 시·구지역의 경우)	80
〈표 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실태(27개 군지역의 경우)	83
〈표 3-20〉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광역 시·도지역의 경우)	86
〈표 3-21〉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광역 시·도지역의 경우)	88
〈표 3-22〉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광역 시·구지역의 경우)	91
〈표 3-23〉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광역 시·구지역의 경우)	93
〈표 3-24〉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군지역의 경우)	96
〈표 3-25〉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군지역의 경우)	98
〈표 3-26〉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경우)	101
〈표 3-27〉	기존사업과의 일치도(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경우)	103
〈표 3-28〉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105
〈표 3-29〉	기존사업과의 일치도(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107
〈표 3-30〉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14세 미만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10
〈표 3-31〉	기존사업과의 일치도(14세 미만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12
〈표 3-32〉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14세 미만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114

〈표 3-33〉 기존사업과의 일치도(14세 미만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116
〈표 3-34〉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	119
〈표 3-35〉 기존사업과의 일치도(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	121
〈표 3-36〉 지자체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65세 이상 비율이 14% 미만인 경우) ……	123
〈표 3-37〉 기존사업과의 일치도(65세 이상 비율이 14% 미만인 경우) ……	125
〈표 4-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현황(2006년 1월 현재) ……	129
〈표 4- 2〉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구성 현황(2006년 1월 현재) ……	130
〈표 4-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 실태(응답지자체 기준) ……	135
〈표 4- 4〉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	141
〈표 4- 5〉 일본 광역지자체의 조직체계 사례비교 ……	150
〈표 4- 6〉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체계 사례비교 ……	153
〈표 4- 7〉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의 업무내용 ……	156
〈표 4- 8〉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의 업무내용 ……	159

## 도 목 차

[도 4-1]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대도시형 본청기구 기구개편 예시) ...	145
[도 4-2]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대도시형 일반구 기구개편 예시) ...	146
[도 4-3]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중소도시형 본청기구 기구개편 예시) .....	147
[도 4-4]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국제 미운영 본청기구 기구개편 예시) .....	148
[도 4-5]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의 위치: 예시 .....	157
[도 4-6]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리본부 및 추진기술지원단(가칭)의 위치: 예시 .....	159

Abstract

## A Study of Organization Improvement for Carrying out Ageing and Fertility Recovery Plan

This study is about the organization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for carrying out ageing and fertility recovery plan which was published by central government in 2006.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have not established an organization for carrying out the Plan yet. That is because local governments have not recognized concretely contents of the Plan or don't know formulation methods, although they recognize.

This report puts emphasis on analysing questionnaire sent to local government to find recognition, necessity of the Plan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cognized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establish action plans. Especially, the necessity of action plans was strongly recognized in local government with high level of self-supporting funds. Secondly, at present the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carrying out projects related to the Plan in various departments.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at local governments need to merge and abolish similar departments. Thirdly, it is said that local government can not establish the action plans because of shortage of budgets and manpower to carry out the Plan.

Conclusionally, it can be suggested that a separate Task Force Team should be established to carry out efficiently action plans, and secondly skill supports to plan and develop the new projects should be delivered with focusing improvement of job specifications.

## 요 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난 2006년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사업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개발, 발표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존 조직체계를 활용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책수행에 큰 걸림돌은 없었다고 보여짐.
  - 다만,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부처, 또는 동일 부처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국,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대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의 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행정체계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로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저출

산의 심화와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대비하고자 작성,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다만,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조직구성원의 업무내용과 직무분석을 통하여만 가능하겠지만, 연구과제의 성격이나 연구기간의 제약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 제2절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
  - 먼저, 설문조사는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自記式으로 작성하게 한 후, 반송되는 방식을 취하였음. 설문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인지수준, 추진조직체계의 구축, 담당부서의 내용, 각 기본계획내용의 중요도 등 주로 기본계획의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 그리고 행정조직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습득하고자 각 대학의 전문가 교수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전문가집단토의를 실시하였음.

## 제2장 행정조직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 제 1절 행정조직개편의 판단기준

#### 1. 능률성과 가외성

- 능률성(efficiency)은 일정 단위의 산출을 생산하거나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입 또는 자원의 측정이란 의미하는데, 행정개혁의 중요한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용감축, 규모축소, 생산성 증진, 벤치마킹, 아웃소싱, 민영화와 같은 추세와 연관되어 있음.

- 행정 조직편제에 있어서 능률성은 특정 기능을 어느 한 부처에서만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증진된다고 가정함.
  - 전체 업무영역을 분할하여 각 부처에게 배분하게 되면, 동일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배분된 업무영역에 대한 부처의 전문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자원을 보다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가외성(redundancy)은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여주는 데 필요한 중복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개념에는 중첩성(overlapping), 중복성(duplication), 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등이 내포되어 있음.
  - 조직편제에 있어서 가외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여러 부서가 같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증진된다고 가정함. 유사한 기능을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독자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한 부처가 담당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실패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으나, 또한 비용이 많이 들고 부처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는 부처편성에 있어서 능률성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가외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임.

## 2. 분업과 조정

- 조직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분업과 조정임.
  - 분업(division of work)은 업무를 어떻게 분할하여 구성원에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분업은 곧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의미함.
  - 전문화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를 세분하면 할수록 작은 규모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은 보다 증진되고 업무의 능률성도 증가됨. 다만, 이처럼 분업이 증가하게 되면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곤란해지

고 서로에게 학습할 기회를 제한시키고 부서이기주의를 초래하게 됨.

- 중앙부처 조직편제에서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추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영역을 세분하여 배분함으로써 부처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타남. 다만, 이는 전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들 간의 조정과 통합은 보다 어렵게 될 것임.
  -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바로 통합(integration) 또는 조정(coordination)의 기능임. 통합이란 조직 내의 차별화 된 부서간의 행동이 조직전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화 자체가 의미 없게 됨.

### 3.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 상호의존성이란 조직구성원 개인이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나 개인과 얼마나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개념임.
  - 따라서 어떤 부서의 상호의존성이 낮다는 것은 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의 도움이나 자원의 교환, 기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 반면에, 어떤 부서의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계속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은 조직편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기능 가운데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은 기능들은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여 조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다만,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하여도 조정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음. 따라서 기능의 재분배 또는 일원화를 검토할 때, 이들 업무 간에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은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4. 안정과 변화

- 조직개편을 논의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판단기준은 안정과 변화 가운데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임. 환경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며 조직개편이 항상 성공을 가져오거나 효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음.
- 반면, 조직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흔들어 주어야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입장이 있음. 정기적으로 조직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조직내부의 이해관계와 권력에 집착하기 보다는 외부환경과 고객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 활동도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임.
-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또한 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함.

#### 5. 판단기준의 적용

- 대안의 비교 평가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조직개편이나 대안을 모색할 경우 각 대안마다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누구의 입장과 시각에서 편익과 비용을 판단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별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첫째, 업무의 상호의존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함. 조직설계의 기본은 기능과 활동인데, 서로 관련이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 부서로 묶는 작업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함.
- 둘째,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함.
- 셋째, 국민편익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패 가능성 축소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

## 제 2절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일반적 절차

### 1. 진단적 단계

- 본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기에 앞서서 진단실무자, 혹은 피 진단기관(진단을 요청하는)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인식을 공유하여야 함. 즉 조직진단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의하고 목적(주제)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조직진단의 대상기관(집단)을 설정하여야 함.
  -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는 조직진단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임.
  - 조직진단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조직진단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임.
  - 배경과 목적이 파악되었다면 그 다음은 조직진단이 실제로 이루어질 대상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진단의 배경, 목적, 대상 집단 등이 분명히 인지되면 진단기관과 피 진단기관은 진단 팀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일정을 구성하게 됨.

### 2. 진단조직 실제 작업단계

- 조직진단의 실제 작업은 몇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조직진단을 위한 모델을 형성 혹은 선택하고, 진단의 구체적 방법을 선택, 시행하며,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형성하며,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설계함.
  - 조직진단에 있어서 모델, 혹은 분석틀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즉, 첫째, 조직에 대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함. 둘째, 조직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의 발견을 용이하게 해줌. 셋째,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해줌. 넷째, 컨설턴트와 진단대상 조직의 구성원간의 대화에 있어서 공통 언어를 개발하게 해주며, 서로간의 이해를 도움.
  - 조직진단의 모델 혹은 분석틀은 진단활동에 담겨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방법들의 실제적인 적용이야말로 조직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조직진단을 위하여 활용되는 주요 방법론들은 문헌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및 관찰, 벤치마킹, 워크숍 및 직무분석이 있음.

- 결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환경분석, 기능분석, 조직구조분석, 인력구조(규모)분석, 업무절차 및 수행상태 분석 등이 있음.
  - 대안의 형성 및 추진전략의 설계가 있음.
- 진단후 단계에서는 보고(Reporting)와 사후조치(Feedback)가 있음.
- 조직진단의 주요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이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며, 그러한 과정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수정작업, 후속조치의 발굴 등이 이어지게 됨. 보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자가 조직진단에 대하여 1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진단의 각 단계마다 진단주체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임.
  - 보고까지 모두 끝난 조직진단과제는 이후의 실행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때 피 진단기관은 추진전략에 따라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과 규정을 개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진단의 내용과 대안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함.

### 제 3절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

####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 가. 지방행정의 본질과 특성

- 행정조직이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형성된 조직이며, 행정권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조직을 말하고, 지방행정의 개념을 광·협의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좁은 의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의와 책임아래 자기의 의의와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이라

보는 경우로,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의 여러 방식 가운데 자치행정 방식만을 지방행정이라고 보는 경우임.

- 둘째, 중간의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은 이를 모두 지방행정으로 보는 경우로 지방행정 수행 방식들 가운데 자치행정과 위임행정 방식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임.
  - 셋째, 넓은 의미 또는 행정의 주체와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을 전술한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지방행정은 일반 행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지방행정은 국가안의 한 지역공동사회를 단위로 하여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 조건 속에서 개별적, 다원적으로 실시되는 ‘지역행정’임.
  - 둘째,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지방의 발전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선행정’임. 따라서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에서와 같이 기안에서 기안으로 끝나는 문서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나면서 현실적인 결과를 직접 구현하는 실질행정인 것임.
  - 셋째,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생활행정’이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행정인 것임.

#### 나. 지방행정 조직의 역할과 대응

-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앞으로 지방행정의 추세는 양적 및 질적인 기능 확대로 나아갈 것이 확실함. 양적확대는 수요증대의 자연적 현상과 새로운 수요의 발생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고, 질적 확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복지에 대한 기대향상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에 의한 분권화에 따라 지방행정이 다루어져야 할 범위와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임.

- 그리고 앞으로의 자치행정수요는 그것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된다는 점 이외에도 해당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 의식수준 및 욕구 행태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정참여가 강조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행정조직이 적합성을 지녀야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 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의 의의와 원칙

-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지역적합성, 상황적응성, 규모적적성, 그리고 현지성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함.
  - 첫째, 지역적합성의 원칙으로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을 그 특질로 하고 있는 바 지방행정조직은 그 지역의 특수성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 유지 또는 개편되어야 함. 한다.
  - 둘째, 상황적응성의 원칙으로 지방행정조직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성, 탄력성을 유지해야 함.
  - 셋째, 규모적적성의 원칙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동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구간의 형평성, 인력배치의 적정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됨.
  - 넷째, 현지성의 원칙으로, 지방행정은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용이하도록 일선 지방행정계층(시·군 또는 읍·면·동)에 지방행정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가능한 많은 사무배분과 함께 행정기능을 이양해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 지방정부의 조직진단이라는 정책결정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지방정책형성의 정치적 환경, 단체장의 리더십, 정부간 관계적 환경이라는 4가지 측면에

서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정책 정향적 측면에서 보면,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및 정책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반 보전, 광범한 지지 획득, 지방공직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감 등을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조직진단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필두로 지역발전과 성장목표달성 및 공정한 조직개편이라는 인식을 통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지지획득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지방정치적 환경을 보면,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지방정치의 산물이 엘리트 중심적 시각인가, 아니면 엘리트 보다는 이슈별로 주도되는 정치연합에 의해 형성되고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시각인가의 양자간 논쟁을 넘어서,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결정의 주된 관심은 지방정치의 산출물로 무슨 정책이 수립되었고,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단체장의 리더십을 들 수 있는데, 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여러 정책결정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조직과 지역주민에 혁신성을 강조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가형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정부간 관계적 환경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기초자치단체간 혹은 상위자치단체간 관계를 통해 국가내의 일정한 구역을 맡아서 제한적인 통치권을 행사함.

#### 다. 조직진단을 위한 조사설계

- 지방행정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진단이 가능하지만, 진단을 통한 조직의 개선 및 변화를 추구한다면 주로 구조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에 대한 진단은 국·과·계의 계층적 조직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임.
- 분석지표로는 ①조직단위별 업무의 편차, ②조직단위별 기능의 변화, ③조직단위 간 협력체계, ④외부환경과의 관계, ⑤조직구조상의 문제점 파악, ⑥조직단위별 분장사무 및 인력의 적절성 여부 등을 들 수 있음.
- 조직관리(organizational management)에 대한 진단은 ①인력관리, ②업무수행관리, ③ 구성원간의 관계, ④근무환경, ⑤시정에 대한 평가 등을 들 수 있음.

라.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방안

- 지방행정조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첫째, 비 통합적·분립적인 구조로 인해 부서간의 할거주의가 팽배하고 횡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임. 이는 업무의 종합·조정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너지(synergy) 창출을 어렵게 만들.
  - 둘째, 기능중심적 조직단위와 업무대상별 조직단위가 혼재된 경우가 있어 조직단위의 중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
  - 넷째, 업무와 기능에 따른 조직설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격무부서와 비 격무부서간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조직진단을 통해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 재 배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안과 인력 재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즉,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조직설계
  - 분권화와 통합의 조화
  - 적정업무 배분 및 조직의 탄력성 부여

### 3. 조직개편의 장애요인

-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적인 과감한 조직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행정수요 예측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과 및 계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경우 소속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수행상의 차질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조직개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의해 반드시 두어야 할 직제(민방위 과)로 인해 조직개편의 범위가 제약받고 있음.
  - 셋째, 대폭적인 조직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극심한 저항을 초래할 수 있음.
  - 넷째, 다양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여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다섯째, 과와 계의 편제를 대폭적으로 수정할 경우 상급정부와 지방의회 의 반대로 인해 실제 채택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여섯째,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내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에 대한 균등한 배려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장애요인을 고려한 개편안을 강구하여야 함.

## 제 3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사례분석

### 제 1절 사례분석결과의 주요내용

- 본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러한 조사설문지는 교수 및 연구전문가의 자문회의와 도움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에 충실

한 설문내용을 개발하였음.

- 조사방법으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조사예산상의 문제와 방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가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었고, 조사 대상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되, 전수 조사를 목표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하였음
- 조사결과는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지역은 10개 시도와 49개 시군구로 나타나 응답률이 각각 62.5%, 21.1%임.

#### 제 2절 사례분석 결과의 요약

-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작성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업무는 현재 여러 기존조직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담당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기본계획의 추진에 맞게 유사 및 산발조직을 통폐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 수준보다는 과 수준에서 신규조직이 구성되기를 제시하고 있음.
  - 셋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내용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는 7~80%의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15%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대체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미작성한 이유로

인력과 예산부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축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음.

-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내용별 담당부서를 보면, 대부분이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출산대책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담당부서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사업내용별 중요도의 인식수준을 보면, 저출산대책에 보다많은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고령화대책부문에서는 기존의 건강부장부문과 사회활동참여와 같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은 상당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는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 4 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 제 1 절 지방행정조직의 현황

-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가 어느 한 부서에서만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부 국이나 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 및 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현황

- 2006년 1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실, 국 및 본부의 수가 서울은 13개, 경기도 17개를 제외하고는 8~12개의 범위내에서 설치되어 있고, 과 및 담당관의 수에서는 서울이 99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70개, 부산 54개로 나타나고 있음.

- 국, 과의 명칭이 각 지자체의 지역실정과 특성을 감안하여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시도간 차이를 볼 수 있음.
- 특히, 고령화정도가 심각한 전남, 전북 및 경북지역, 그리고 지방재정사정이 양호한 서울, 대전 및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의 정책관심도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됨.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사업들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명을 살펴본 것인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부문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부문은 복지환경국 및 사회산업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은 복지환경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부문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과별로 보면, 모든 부문에서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관련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관련 애로사항**

- 각 응답한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 조직체계와의 관계측면에서 보면, 전담팀 또는 총괄조직의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담당부서의 부재 또는 산재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둘째, 인적구성측면에서 보면,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의 구성 필요, 관련조직간 연계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업무량의 증가는 신규업무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기본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셋째, 예산배분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중앙정부

의 기본계획추진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의 추가사업이 기본계획이지 않기 때문에 현존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배분을 하면, 예산의 큰 증액없이도 기본계획의 추진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음.

- 넷째, 기타 의견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어려움, 시행계획 수립시기의 적시성 문제, 단기적 시각에서의 복지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기틀마련과 파급효과 분석 필요,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대책 강구 및 생산적 복지정책 지향 등이 제시되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①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 ②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홍보 및 수혜가 필요, ③저출산·고령사회의 피부체감도가 낮아 실질적인 사업구도 방향 교육이 필요, ④새로운 대책 마련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보완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 ⑤획기적인 정부지원(셋째아 대학등록금 지원 등)등이 필요, ⑥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성격상 당연한 현안업무에 밀려 직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 ⑦간부조직의 관심을 제고시켜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 등이 제시되고 있음.

####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 개편내용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업무효율화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민생활서비스체계의 재편안을 보면, 대도시형 본청기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주민서비스과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일반구, 중소도시형 본청기구, 국제 미운영의 시군구 본청기구 등은 대동소이함.

## 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사례분석

-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하고자 지난 1995년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을 근거로 하여 고령사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고령사회대책 내용을 참조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시마네(島根)현과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사이타마(埼玉)현의 행정조직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즉, 고령자정책과 관련한 특정 국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담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차이점을 열거한다면, 고령화현상의 심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노인계층의 인구를 유입하거나, 출산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시마네현에서는 건강복지부 청소년가정과내에 소자화대책추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사이타마현에서는 별도의 대책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청소년과, 아동안전과, 자녀양육지원과 등과 같이 여러 과에서 소자화대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의 조직구성을 비교해 보면, 즉, 마츠에시는 인구고령화율이 22.2%(2004년)인 반면에 사이타마시는 14.7%로 전국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도시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 도시를 비교해 보더라도 소자화 및 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한 특정 국이나 과를 설치, 운영하지는 않고, 관련 여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특성을 찾아본다면, 일본에서는 소자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6월에 男女共同參劃社會基本法을 제정하였고, 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 과나 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제 2 절 조직체계의 구축방안

## 1.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 설치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추진부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동 기구의 담당업무는 기본계획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기획, 조정 및 평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첫째, 기획업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함.
  - 둘째, 조정업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중복적인 사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 셋째, 진단평가업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사업결과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표 1〉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의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에 기반한 사업개발</li> <li>○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분석 및 신규사업 개발</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담당자 연수교육 기획</li> </ul>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각 국·과 부서별 사업내용의 업무조정</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상담 자문</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중앙과 지방간 연락조정</li> </ul>
진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실적 평가</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비교 평가</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우수사례 평가</li> </ul>

2.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 설치운영

-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은 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 조정 및 진단평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이라 할 수 있음.
  - 첫째, 기획홍보지원으로, 이는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해당지역내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 둘째, 연수교육지원으로,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말함.
  - 셋째, 진단평가지원으로,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실적) 제대로 진단,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표 2〉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의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기획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개발 기술지원</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홍보 기술지원</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의 운영계획 작성</li> </ul>
연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대상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기술 연수교육</li> <li>○ 해당권역내 공공 및 민간단체 실무자대상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기술 연수교육</li> <li>○ 해당권역내 학계 및 실무전문가의 세미나, 간담회 개최</li> </ul>
진단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평가방법 기술지원</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추진과정상의 진단 및 실적평가 기술지원</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추진조직체계의 진단 기술지원</li> </ul>

## 제 5 장 결론

-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국가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제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획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와 관내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뒤따라야 하겠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 추진조직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축되어 있어야 하겠음.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06년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자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등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사업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실행해오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한다고 하면, 별도의 인력과 사업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지 않고 현행 추진사업과 유사하거나 기존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사업조직의 체계를 수정, 변경하는 수준에서 기본계획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개발, 발표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존 조직체계를 활용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정책수행에 큰 걸림돌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부처, 또는 동일 부처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국,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대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각종 관련정책을 개발,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인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설치하는가 하면, 지방정부에서도 시군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6년도에 뉴타운 조성이나 청계천복원추진과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 본부나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수원시의 신도시사업추진단, 성남시의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안양시의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및 경전철사업단, 동해시의 현안대책추진단, 평창군의 스포츠사업단, 철원군의 자치발전기획단, 단양군의 사회복지단 등과 같이 課급 수준의 조직을 설치하기도 한다(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편람, 2006).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의 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통합서비스 제공체제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행정체계를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로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를 위해서 53개 시군구에서 조직개편 초안을 행자부에 제출하였다. 시군구 본청은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민간협력 등 일선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와 업무의 집중화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기능을 배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 조정·연계담당 및 통합조사담당은 반드시 설치하며 문화·관광·체육조직을 가급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이와 같이 최근 지방행정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각 시군구마다 기존의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 또는 개편을 단행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저출산의 심화와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대비하고자 작성,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조직구성원의 업무내용과 직무분석을 통하여만 가능하겠지만, 연구과제의 성격이나 연구기간의 제약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설문조사는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自記式으로 작성하게 한 후, 반송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인지수준, 추진조직체계의 구축, 담당부서의 내용, 각 기본계획내용의 중요도 등 주로 기본계획의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조직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습득하고자 각 대학의 전문가 교수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전문가집단토의를 실시하였다. 원래 이는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이라 하여,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소비자 면접조사에 유래하고 있다. 즉, 초점집단면접법이라고도 하는데, 표적시정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6~12명 정도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조사기법이다. 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정량적(quantitative) 조사방법과는 달리 토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정성적(qualitative) 조사방법이며, 정량적 조사에 앞서 탐색조사로 이용된다.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며, 응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가 도출되어야 하므로 면접자는 응답자 전원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대화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므로 면접자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청취능력, 응답자 발언에 이은 탐사질문 능력이 요구된다. 면접법의 결과로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소비자의 제품구매 및 사용실태에 대한 이해, 제품사용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이 실제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짧은 시간내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제 2 장 행정조직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 제 1 절 행정조직개편의 판단기준

#### 1. 능률성과 가외성

능률성(efficiency)은 일정 단위의 산출을 생산하거나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입 또는 자원의 측정이란 의미이다. 능률성은 행정개혁의 중요한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용감축, 규모축소, 생산성 증진, 벤치마킹, 아웃소싱, 민영화와 같은 추세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적은 자원을 들여서 목표 생산 수준을 달성했다면 그 조직은 능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능률성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노력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러나 능률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산원가를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으로 타 회사보다 능률성은 높였을지라도 품질이 저하되어 판매량이 감소한다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 조직편제에 있어서 능률성은 특정 기능을 어느 한 부처에서만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증진된다고 가정한다. 전체 업무영역을 분할하여 각 부처에게 배분하게 되면, 동일한 업무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배분된 업무영역에 대한 부처의 전문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자원을 보다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각 부처마다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편제하면, 업무와 기능을 중첩되지 않게 배분하게 되어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게 된다. 각 부처는 고유한 업무영역을 배분 받아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처들이 자신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부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게

된다면 각 부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한 특정부처의 정책이 실패하게 될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곤란하게 된다. 즉, 부처편성에서 능률성을 증진시키게 되면 이와 함께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가외성(redundancy)은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고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여 주는 데 필요한 중복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에는 중첩성(overlapping), 중복성(duplication), 동등잠재력(equipotentiality) 등이 내포되어 있다. 중첩성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혼합적으로 수행되는 상태를 말한다. 중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등잠재력은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 단위기관들이 주된 단위의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조직편제에 있어서 가외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여러 부서가 같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증진된다고 가정한다. 유사한 기능을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독자적으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한 부처가 담당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실패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으나, 또한 비용이 많이 들고 부처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부처간의 경쟁이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는 부처편성에 있어서 능률성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가외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 2. 분업과 조정

조직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분업과 조정이다. 분업(division of work)은 업무를 어떻게 분할하여 구성원에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분업은 곧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의미한다. 전문화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를 세분하면 할수록 작은 규모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은 보다 증진되고 업무의 능률성도 증가된다. 하지만 이처럼 분업이 증가하게 되면 부서간의 의사소통이 곤란해지고 서로에게 학습할 기회를 제한시키고 부서이기주의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이 전문화될수록 조직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단위 조직의 전문화로 인하여 조직 전체 목표로의 통합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조직편제에서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추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영역을 세분하여 배분함으로써 부처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동일한 규모의 업무를 10개 부처가 분담하게 되는 경우와 20개 부처가 분담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개 부처로 분업화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들 간의 조정과 통합은 보다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바로 통합(integration) 또는 조정(coordination)의 기능이다. 통합이란 조직 내의 차별화 된 부서간의 행동이 조직전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화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조직편제에서 조정과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추구할 수 있다. 각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평적인 통합방법과, 계층적 권한체계에 의한 수직적 조정, 그리고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한 부처로 일원화함으로써 부처 안에서 수직적인 계층과 감독, 수평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정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조직편제에서 주로 감안해야 하는 통합방법은 부처간의 상호 연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부처간 조정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 기능의 일원화를 통하여 부처 내 조정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처간 조정방식을 택한다고 하면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처들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여도 무방하지만, 부처 내 조정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유사한 기능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담당자 간의 수평적인 연계와 의사소통, 부처 상호간의 빈번한 상호작용과 협력, 다양한 회의체를

통한 효율적인 조정 등 부처간의 수평적인 연계와 조정이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수행 될 수 있다면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처들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부처이기주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상호 조정이 요구되는 유사한 기능들은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부처내 권한위계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3.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상호의존성이란 조직구성원 개인이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나 개인과 얼마나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부서의 상호의존성이 낮다는 것은 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서의 도움이나 자원의 교환, 기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부서의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계속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ompson(1967)은 조직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성을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순차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집합적 상호의존성은 부서간의 상호의존성이 거의 없는 형태를 의미한다. 순차적 상호의존성은 한 부서의 활동이 다른 부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호의존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부서의 행동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뒤따르는 부서의 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상호의존성의 정도는 집합적 상호의존성보다는 높다. 교호적 상호의존성은 관련 부서간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말한다.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의 활동이 동시에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되는 모든 부서들이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집합적 상호의존성의 경우에는 규칙이나 표준화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순

차적 상호 의존성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회의, 수직적 의사소통 및 계획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호적 상호의존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조정, 비정기적인 회의, 직접대면에 의한 의사소통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은 부서간의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비용은 부서간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빈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교호적 상호작용에서는 가장 많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조정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집합적 상호의존성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교호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서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 부처에 모으는 것이 조정을 위한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며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서화에 따르는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정비용이 가장 높은 업무부터 한 조직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호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문들을 먼저 같이 묶어 한 부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문끼리 연결하여 부서화하고, 마지막으로 집합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문들을 연결하여 부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은 조직편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중앙부서가 담당하는 기능 가운데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은 기능들은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여 조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 다고 하여도 조정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능의 재분배 또는 일원화를 검토할 때, 이들 업무 간에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은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4. 안정과 변화

조직개편을 논의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판단기준은 안정과 변화 가운데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환경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며 조직개편이 항상 성공을 가져오거나 효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조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안

정이 가져오는 장점과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안정적 분위기에 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방해를 받게 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들이 발생하며 변화의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성급하게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직은 주기적으로 한번씩 흔들어 주어야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입장이 있다. 정기적으로 조직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조직내부의 이해관계와 권력에 집착하기 보다는 외부환경과 고객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 활동도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또한 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여부가 안정과 변화사이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5. 판단기준의 적용

대안의 비교 평가시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개편이나 대안을 모색할 경우 각 대안마다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누구의 입장과 시각에서 편익과 비용을 판단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여러 이해당사자 들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별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업무의 상호의존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설계의 기본은 기능과 활동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 부서로 묶는 작업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업무들을 한 부처에서 수행하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조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직개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능과 업무들이 서로 상호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개편의 대안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셋째, 국민편익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무엇보다도 정책의 실패 가능성 축소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외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설정한다.

## 제 2절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일반적 절차

조직진단은 조직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조직구성요소의 역기능적 측면을 변화시켜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Harrison(1994)은 조직진단(organizational diagnosis)에 대해 “조직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특정문제의 해결 또는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의 개념모형과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진단은 조직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 1. 진단적 단계

본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기에 앞서서 진단실무자, 혹은 피 진단기관(진단을 요청하는)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즉 조직진단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의하고 목적(주제)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조직진단의 대상기관(집단)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인식되었을 때, 진단을 수행하는 진단팀을 구성하고 전체 일정과 세부일정을 확정하여 조직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단계는 순차적이면서도 동시에 복합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진단의 배경은 목적을 결정하며, 그러한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진단의 대상과 주체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단계가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가. 조직진단의 배경 파악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는 조직진단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조직진단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은 기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진단은 거의 대부분 외부적인 압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즉, 정부조직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기능의 이양 압력을 받는다가 나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조직진단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정부 구조 개편의 과정에 대비하여 특정 기관이 자율적으로 먼저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실상 외부적인 압력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조직진단 목적(분야)의 구체화

조직진단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조직진단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는 논자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직진단의 목적은 진단의 결과 바꾸고 싶은 것이 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진단의 결과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인가, 업무수행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성과관리방식을 형성(개편)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흔히 조직진단의 범위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며, 정부조직 진단의 경우 기능, 구조, 인력, 업무수행방식, 리더쉽 등 대부분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들은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상호간에 일정부분 중복적이다.

#### 다. 조직진단 대상 집단의 명확화

배경과 목적이 파악되었다면 그 다음은 조직진단이 실제로 이루어질 대상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조직의 경우 고객집단의 인식은 사실상 조직진단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90년대의 행정개혁 조류 이후 고객이라는 용어는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으나, 실제 행정의 현장에서 고객이라는 용어는 일반국민이라는 매우 넓고도 추상적인 대상 이상의 의미는 지니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정부조직 혹은 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에서 진단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범주는 주로 일반국민,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는 집단, 시민단체, 정부 내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사기관, 전문가집단 등이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진단대상 집단이 피 진단기관 자체임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진단 주체는 우선적으로 피진단기관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 진단을 위한 준거집단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정부조직들이 단일한 하나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소속기관, 하부기관, 관련법인 등으로 구성되므로 진단대상의 범위를 이들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본부나 본청 등에 한정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 라. 진단팀 구성 및 일정관리

진단의 배경, 목적, 대상 집단 등이 분명히 인지되면 진단기관과 피 진단기관은 진단 팀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일정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단 팀을 구성할 때, 피 진단기관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해당 정부기관의 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피 진단 기관 인력의 참여는 주로 태스크 포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인력은 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서 현실성을 부여하고 최종적인 대안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진단기관과 피 진단기관 모두 반드시 인식해야만 하는 것은 피진단기관의 진단 참여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절대로 주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정의 관리 또한 중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정부조직진단이 복합적인 목적 하에 여러 과정을 동시에 운용하여 복수의 대안을 형성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일정관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2. 진단조직 실제 작업단계

조직진단의 실제 작업은 몇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조직진단을 위한 모델을 형성 혹은 선택하고, 진단의 구체적 방법을 선택, 시행하며,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설계한다.

### 가. 조직진단 모델의 형성 혹은 선택

조직진단의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독자적인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진단 모델은 분석틀이라는 개념과 혼용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조직진단에 있어서 모델, 혹은 분석틀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조직에 대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조직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의 발견을 용이하게 해준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컨설턴트와 진단대상 조직의 구성원 간의 대화에 있어서 공통 언어를 개발하게 해주며, 서로간의 이해를 돕는다.

### 나. 조직진단의 구체적 기법과 적용

조직진단의 모델 혹은 분석틀은 진단활동에 담겨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포함하며, 이러한 방법들의 실제적인 적용이야말로 조직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조직진단을 위하여 활용되는 주요 방법론 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문헌분석

문헌분석의 주요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 관련 학술서적, (2차) 통계자료, 유사진단결과 등이다. 문헌분석은 피 진단 기관에 대한 진단기관의 학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적절한 문헌분석은 진단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진단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문헌분석은 진단과 분석의 전문성을 보유한 진단기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 진단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피 진단기관은 진단기관에서 요구하는 문헌자료 이외에도 태스크 포스팀의 활동 등을 통하여 진단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헌자료들을 발굴, 전달하고, 진단목적을 위한 특정한 문서와 문헌을 생산하는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②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거의 모든 조직진단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사실상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단기관은 피 진단기관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단기관(연구자)들이 설문조사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설문지의 내용작성, 대상의 선택, 지문의 구성, 그리고 해석에 이르기까지 진단기관은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피 진단기관은 설문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진단기관들이 해당 기관의 특성과 업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된다.

### ③ 인터뷰 및 관찰

인터뷰와 관찰은 별개의 활동이지만, 대상 집단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조직진단에 있어서 인터뷰의 역할은 설문조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설문조사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다루거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진단이 되기 위하여 인터뷰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인터뷰 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함께, 인터뷰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된다.

인터뷰의 내용은 물론 조직진단의 모든 목적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인터뷰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기관 전체의 견해가 대표될 수 있도록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찰은 설문조사의 인터뷰 결과를 보완하는 수단이지만, 가장 큰 의미는 직무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직무분석 가운데 피 진단기관의 가장 큰 관심대상은 업무량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적정 인력배분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어떠한 분석기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공공부문 조직에 있어서의 정확한 업무량 측정과 적정 인력 산정은 쉽지 않으며, 이를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찰이다.

#### ④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진단과정에서 문제의 인식보다는 주로 대안의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벤치마킹의 대상은 주로 외국의 유사기관 사례, 국내의 유사기관사례,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부문의 사례가 정부조직 진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 것은 역시 신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등의 흐름이 나타난 이후의 일이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또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벤치마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함께 맥락의 종합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벤치마킹을 통하여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목적지향적인

것이어서 기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은 그 기관의 고유한 역사와 배경,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없이 표면적인 내용만을 분석하고 적용할 경우, 이는 진단의 결과와 대안의 적합성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⑤ 워크숍

워크숍은 진단팀과 피 진단기관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조직진단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확산과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인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워크숍은 보통 대상조직 구성원들과 진단팀 구성원들이 몇 개의 팀을 이루어 정해진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⑥ 직무분석

직무분석은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진행되는데, 대부분은 단위조직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량을 파악하는 등,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직무분석은 원칙적으로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는 주로 실제적인 주요업무의 파악, 개별업무의 특성, 발생량, 업무의 중요도, 업무간의 연계성, 업무의 흐름 등이 된다. 업무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BPR과 같은 독자적인 분석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결과의 분석

#### ① 환경분석

조직분석을 위한 분석의 첫 단계는 조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조직의 직접적 환경(정부부처, 고객집단, 조직의 구조와 인

력 등)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피는 것과 함께,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의 결론은 당연히 앞으로의 조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환경분석이 조직진단에 있어서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조직의 장기적 비전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는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

환경분석을 위한 주요한 방법론은 문헌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벤치마킹 등인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론의 사용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반드시 분석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 ② 기능분석

환경분석에서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모습을 상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에 맞추어 조직 기능의 미래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조직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강화, 유지, 폐지, 신설 등 변화의 방향을 정립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핵심기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다시 각각의 핵심기능별로 세부기능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기능별로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것이므로 이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든가, 폐지되어야 한다든가 등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기능분석을 위하여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문헌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벤치마킹 등이 있다. 특히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하여 SWOT 분석을 수행한다면 기능분석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 ③ 조직구조분석

이 단계의 분석은 조직의 구조가 기능변화의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기능의 바람직한 변화상태를 설정하고 현재의 조직구조를 대비시킨 다음 영자간의 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지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활용되는 방법은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직무분석 등이 대표적인데 조직진단의 다른 어떤 과정보다도 진단주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다.

#### ④ 인력구조(규모)분석

인력구조 분석은 실제로는 조직구조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조직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반드시 인력구조 및 규모의 변경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조직구조에 대한 변동 없이도 인력상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독립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는 적정인력규모의 산정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작정인력규모의 산정이란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조직구조와 기능배분의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정인력의 산정은 상당 부분 업무량의 측정에 의존한다. 그러한 측정은 주로 구성원들의 진술과 직무기술서 내용의 분석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량을 단위직무별로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팀의 입장에서는 잘못 기재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정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 유용한 것이 직무관찰이다. 관찰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기술내용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때로는 직무기술을 거치는 절차 없이 바로 관찰만을 활용하여 단위직무별 업무량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무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량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업무량의 절대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⑤ 업무절차 및 수행상태 분석

업무의 절차와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BPR 등의 독자적인 방법을 수행하기 전에는 완전한 분석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절차와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능의 구체

적 수행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최근의 경향은 그러한 업무흐름을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을 통합하여 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직적 분석은 보다 친숙한 것으로서 업무의 시작부터 완결까지의 과정을 단위조직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수평적 분석은 전체조직내의 단위조직 간의 업무흐름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라. 대안의 형성 및 추진전략의 설계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구체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능, 조직, 인력에 대한 분석의 결과 특정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이다.

기능분석에서 주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능의 이양, 위임, 위탁, 민간화 등이 된다. 이러한 부분 이외의 것들은 조직구조와 인력구조의 대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조직의 슬림화 방안, 태스크 포스나 애드호크 조직 등 조직형태의 개선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되고, 인력측면에서는 적정 역량을 갖춘 인력확보방안, 기존 구조 하에서의 인력배분의 재편방안, 인력규모의 감축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모든 대안들은 해당 기관이 독자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외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거나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운 대안들도 있다. 따라서 제시된 대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내부적인 완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진단후 단계

가. 보고(Reporting)

조직진단의 주요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이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보

고하고 승인을 받게 되며, 그러한 과정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수정작업, 후속 조치의 발굴 등이 이어지게 된다. 보고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피 진단기관 실무자들과의 원만한 의견교환과 조율을 모두 거치고도 최고 의사결정자 단계에서 의견의 충돌을 겪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진단과정에서 일선 직원부터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자가 조직진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진단의 각 단계마다 진단주체와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과정은 대개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서 조직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전달되는 과정이기 쉬우므로, 진단기관과 피 진단기관 모두는 그러한 보고내용이 간접적으로나마 기관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나. 사후조치(Feedback)

보고까지 모두 끝난 조직진단과제는 이후의 실행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피 진단기관은 추진전략에 따라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법과 규정을 개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단의 내용과 대안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진단기관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시된 진단결과 이외에 후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제가 어떤 것들인지를 정리하여 피 진단기관에 대한 실행조치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단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 작업이며 동시에 앞으로 추진할 다른 조직진단 작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진단기관과 피 진단기관과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 3 절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

####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 가. 지방행정의 본질과 특성

행정조직이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형성된 조직이며, 행정권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조직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를 의미한다. 조직은 인간의 모든 사회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고도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개념을 밝히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방행정을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혹은 local self-government)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방자치와 대립되는 관치행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지방에 있어서의 통치활동에 대립되는 의미의 행정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행정의 개념을 광·협의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좁은 의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의와 책임아래 자기의 의의와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이라 보는 경우이다.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의 여러 방식 가운데 자치행정 방식만을 지방행정이라고 보는 경우이다.

둘째, 중간의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은 이를 모두 지방행정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는 지방행정 수행 방식들 가운데 자치행정과 위임행정방식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넓은 의미 또는 행정의 주체와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을 전술한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행정은 일반 행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행정은 국가안의 한 지역공동사회를 단위로 하여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 조건 속에서 개별적, 다원적으로 실시되는 ‘지역행정’이다.

둘째,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지방의 발전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선행정’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에서와 같이 기안에서 기안으로 끝나는 문서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현실적인 결과를 직접 구현하는 실질행정인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생활행정’이며, 따라서 구체적으로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행정인 것이다. 뒷골목 청소, 미곡 반 출입, 연료공급, 영농 등 주민들의 생활 그 자체가 곧 지방행정의 대상이 된다.

#### 나. 지방행정 조직의 역할과 대응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앞으로 지방행정의 추세는 양적 및 질적인 기능 확대로 나아갈 것이 확실하다. 양적확대는 수요증대의 자연적 현상과 새로운 수요의 발생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고, 질적 확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복지에 대한 기대향상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에 의한 분권화에 따라 지방행정이 다루어져야 할 범위와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치행정수요는 그것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된다는 점 이외에도 해당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 의식수준 및 욕구 행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정참여가 강조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행정조직이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행정은 점증하는 지역적 욕구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집권적 행정기능에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적 행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 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의 의의와 원칙

분권화와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행정이 변화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주민들의 증대된 자치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일차적 과제는 지역주민의 증대된 행정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전개와 더불어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다양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스스로가 자치행정수요 변화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어서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수 없고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지방행정의 진정한 역할과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고 격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변동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의 변혁(innovation)이라 하겠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은 지역적합성, 상황적응성, 규모적적성, 그리고 현지성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적합성의 원칙이다.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을 그 특질로 하고 있는 바 지방행정조직은 그 지역의 특수성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 유지 또는 개편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직의 지역별 특수성을 의미한다.

둘째, 상황적응성의 원칙이다. 지방행정조직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신축성, 탄력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조직의 동태성을 의미한다.

셋째, 규모적정성의 원칙이다. 지방행정조직이 그 지역의 특수성과 동태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구간의 형평성, 인력배치의 적정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넷째, 현지성의 원칙이다. 지방행정은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용이하도록 일선 지방행정계층(시·군 또는 읍·면·동)에 지방행정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가능한 많은 사무배분과 함께 행정기능을 이양해야 한다. 이것은 주민의 행정 참여 보장을 의미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 및 행정수요 예측과 아울러, 현재 지방행정조직이 처해 있는 실정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개편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단과정에서는 내적으로 지방행정의 기능, 직무, 조직, 인사, 계층구조, 재정 등에 대한 분석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조직진단이라는 정책결정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지방정책형성의 정치적 환경, 단체장의 리더십, 정부간 관계적 환경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 방향적 측면에서 보면,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및 정책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반 보전, 광범한 지지 획득, 지방공직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감 등을 토대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직진단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필두로 지역발전과 성장목표달성 및 공정한 조직개편이라는 인식을 통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지지획득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정치적 환경을 보면,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치의 산물이 엘리트 중심적 시각인가, 아니면 엘리트 보다는 이슈별로 주도되는 정치연합에 의해 형성되고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시각인가의 양자간 논쟁을 넘어서,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결정의 주된 관심은 지방정치의 산출물로 무슨 정책이 수립되었고,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단체장의 리더십을 들 수 있는데, 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여러 정책결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강시장형 단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형성과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조직과 지역주민에 혁신성을 강조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가형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간 관계적 환경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기초자치단체간 혹은 상위자치단체간 관계를 통해 국가내의 일정한 구역을 맡아서 제한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에는 타 자치단체의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 간 관계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다. 조직진단을 위한 조사설계

지방행정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진단이 가능하지만, 진단을 통한 조직의 개선 및 변화를 추구한다면 주로 구조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에 대한 진단은 국·과·계의 계층적 조직구조가 제대로 기능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지표로는 ① 조직단위별 업무의 편차, ② 조직단위별 기능의 변화, ③ 조직단위 간 협력체계, ④ 외부환경과의 관계, ⑤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파악, ⑥ 조직단위별 분장사무 및 인력의 적절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조직관리(organizational management)에 대한 진단은 ① 인력관리, ② 업무수

행관리, ③ 구성원간의 관계, ④ 근무환경, ⑤ 시정에 대한 평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 들의 근무의욕과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둔다.

## 라.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방안

### 1) 기본방향

지방행정조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첫째, 비 통합적·분립적인 구조로 인해 부서간의 할거주의가 팽배하고 횡적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업무의 종합·조정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너지(synergy)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기능중심적 조직단위와 업무대상별 조직단위가 혼재된 경우가 있어 조직단위의 중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업무와 기능에 따른 조직설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간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진단을 통해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직개편 및 인력 재 배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개편안과 인력 재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조직설계

조직개편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부문, 민·관 협력 및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문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는 부문은 강화해야 하는 반면,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내부관리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문은 축소한다.

#### ② 분권화와 통합의 조화

전문영역별로 분권화를 촉진하면서도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조정·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조직구성원들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종합계획 중심의 기획기능과 조정·협력기능의 강화를 통해 조직의 통합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조직진단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협력 및 조정기능의 보강이 시급한 과제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비협조적 관계에 있는 부서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③ 적정업무 배분 및 조직의 탄력성 부여

조직단위별로 적정하게 업무를 배분하여 조직단위간의 편차를 축소하고 조직이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탄력성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공정한 배분과 업무의 연관성(전문성 및 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결재경로 및 업무추진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권한의 위임을 통해 조직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의 재배분을 통해 조직진단 결과 나타난 격무부서와 비 격무부서의 업무량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민원과 진정이 많은 부서의 개인별 업무량을 축소하는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조직단위별로 업무량에 비례한 적정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환경변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업무는 폐지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업무과중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의 개선 및 사무자동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조직개편의 장애요인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과 조직의 실태파악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 진단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등이 구체화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제약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혹은 상위정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적인 과감한 조직개편이 곤란하다.

첫째, 행정수요 예측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과 및 계를 대폭적으로 축소할 경우 소속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수행상의 차질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조직개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의해 반드시 두어야 할 직제(민방위 과)로 인해 조직개편의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

셋째, 대폭적인 조직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극심한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여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다섯째, 과와 계의 편제를 대폭적으로 수정할 경우 상급정부와 지방의회의 반대로 인해 실제 채택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내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에 대한 균등한 배려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장애요인을 고려한 개편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단체장의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

## 제 3장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관련 사례분석

### 제 1 절 사례분석 결과의 주요내용

본 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설문지는 교수 및 연구전문가의 자문회의와 도움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에 충실한 설문내용을 개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조사예산상의 문제와 방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가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되, 전수조사를 목표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하였다.

조사결과는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지역은 10개 시도와 49개 시군구로 나타나 응답율이 각각 62.5%, 21.1%정도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는 전국 시군구의 실태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응답한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 수준에서 그치고자 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1. 일반적 특성

전체적으로 본 조사에 응답한 지자체는 <표 3-1>에서 보듯이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10개 지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49개 지역이었고, 이 중에서 시군구 자치단체는 22개 지역, 군 자치단체는 27개 지역이었다. 재정자립도측면에서 보면, 20% 미만이 27개 지역, 20~50% 미만이 25개 지역, 50% 이상이 7개 지역으로 나타나, 응답한 자치단체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절반 가량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14세 이하 아동인구비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전체인구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8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노인인구비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인구대비 14% 이상을 차지 하는 지역이 30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도시 보다는 군단위의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 지자체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개)

	지역수
지역별	59
광역시·도	10
시·구	22
군	27
재정자립도	59
20%미만	27
20~50%	25
50%이상	7
인구비중	
14세이하 인구	59
20%미만	51
20%이상	8
65세이상 인구	59
14%미만	29
14%이상	30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 작성의 필요성 수준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먼저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5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5개로 응답지역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자체는 모든 응답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구의 도시지역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7개, ‘부분적으

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3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2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응답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1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5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1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 작성 필요도 인식수준 (단위: 개)

	매우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필요	필요하지 않다	계
지역별				
광역시·도	5	5	-	10
시·구	7	13	2	22
군	11	15	1	27
재정자립도				
20% 미만	9	17	1	27
20~50%	10	14	1	25
50% 이상	4	2	1	7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20	29	2	51
20% 이상	3	4	1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13	14	2	29
14% 이상	10	19	1	30

재정자립도별로 보면, 자립도가 20% 미만의 지역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9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7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1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가 20~50% 미만의 지역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0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4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그 중에서 1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가 50% 이상의 지역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4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2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1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정자립도 수준과 무관하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 작성에 대한 필요성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비중별로 보면, 14세 이하 인구의 비중을 중심으로 보면, 20% 미만의 비중을 지닌 지역인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20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29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2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 이상의 비중을 지닌 지역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3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4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1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인구비중이 14%를 초과하는 지역을 보더라도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0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이 19개로 응답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1개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인구비중별로 보더라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작성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역에서는 다른 경우보다도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한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저출산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지역이 있었고, 기타의 의견을 제시한 지역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극히 일부 도시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표 3-3> 참조).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의 담당 조직형태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지역에서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부서에서 담당하는 지역은 드문 실정이다. 또한 그 중에는 담당부서조차 갖추어져 있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단일부서에서 담당하거나 아예 담당부서가 없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3>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 않아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	-	-	-	-
시·구	1	-	-	1	2
군	-	-	-	1	1
재정자립도					
20% 미만	-	-	-	1	1
20~50%	1	-	-	-	1
50% 이상	-	-	-	1	1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1	-	-	1	2
20% 이상	-	-	-	1	1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1	-	-	1	2
14% 이상	-	-	-	1	1

〈표 3-4〉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조직형태  
(단위: 개)

	여러 조직이 담당	단일 조직이 업무수행	담당조직 없음	계
지역별				
광역시·도	9	-	1	10
시·구	20	1	1	22
군	21	3	3	27
재정자립도				
20% 미만	22	3	2	27
20~50%	22	1	2	25
50% 이상	6	-	1	7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42	4	5	51
20% 이상	8	-	-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5	1	3	29
14% 이상	25	3	2	30

####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한 신규조직 구성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가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가 시구 지역이나 군지역에 비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재정자립도측면에서 보면, 50% 이상의 자립률을 보인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비중측면을 보면, 14세 이하 인구비중이 20% 미만인 지역과 노인인구비중이 14% 이상인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조직체계의 통합필요성  
의식수준

(단위: 개)

	그렇다	현재 방식으로도 별 어려움 못 느낀다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8	1	-	9
시·구	12	3	5	20
군	16	4	-	20
재정자립도				
20% 미만	16	5	-	21
20~50%	17	3	2	22
50% 이상	3	-	3	6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31	7	3	41
20% 이상	5	1	2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17	3	5	25
14% 이상	19	5	-	24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가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 과 중에서 어느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課) 단위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와 시구 지역에 비하여 군지역의 경우 과 단위와 기타 형태의 조직체계형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지역의 경우 과 단위도 큰 부서에 속하기 때문에 계 단위나 담당자수준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국단위를 제시하는 지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계획의 인식정도가 아직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자립도별로 보나, 인구비중별로 보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 조직체계의 구축 수준

(단위: 개)

	국	과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1	8	-	9
시·구	2	10	2	14
군	-	10	7	17
재정자립도				
20% 미만	2	10	5	17
20~50%	1	14	4	19
50% 이상	-	4	-	4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3	22	9	34
20% 이상	-	6	-	6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1	16	3	20
14% 이상	2	12	6	20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가 산재해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청과 보건소 중, 어느 수준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본청 단위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에서 높게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에서조차 보건소단위에서 통합하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구 지역과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보건소에서 통합된 대책수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별로 보면, 자립도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보건소수준에서의 통합의식이 높고, 인구비중측면에서는 14세 이하 인구비중이 낮거나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수준에서의 통합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조직체계의 통합방법

(단위: 개)

	보건소	본청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1	6	-	7
시·구	6	9	1	16
군	4	11	1	16
재정자립도				
20% 미만	6	11	1	19
20-50%	5	12	1	18
50% 이상	-	3	-	3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10	21	2	33
20% 이상	1	5	-	6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	15	1	18
14% 이상	9	11	1	21

###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인지수준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거나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지역별로 보면,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지역이 광역 시도보다 시·구 및 군지역의 순으로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측면에서 보면, 자립도수준이 높을수록 ‘자세하게 알고 있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인구비중측면에서 보면, 연소인구가 높거나 노인인구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정도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지역도 있지만, 그 반면에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3-8〉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인지수준

(단위: 개)

	자세하게 안다	대략적으로 안다	거의 모른다	계
지역별				
광역시·도	5	4	1	10
시·구	5	14	3	22
군	1	21	5	27
재정자립도				
20% 미만	2	21	4	27
20~50%	4	17	4	25
50% 이상	5	1	1	7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8	35	8	51
20% 이상	3	4	1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9	14	6	29
14% 이상	2	25	3	30

####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작성여부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상당한 지역에서 작성해 놓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9〉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작성해 놓고 있는 반면에, 시구지역은 11개, 군지역은 6개 정도가 작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측면에서 보면, 자립도수준이 높을수록 작성해 놓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의 경우 작성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비중측면에서 보면, 연소인구비중이나 노인인구비중의 차이에 따라 작성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재정자립도의 수준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9〉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작성여부

(단위: 개)

	그렇다	그렇지 못한 편이다	계
지역별			
광역시·도	8	2	10
시·구	11	11	22
군	6	21	27
재정자립도			
20% 미만	9	18	27
20~50%	12	13	25
50% 이상	4	3	7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22	29	51
20% 이상	3	5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14	15	29
14% 이상	11	19	30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10>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시구지역은 인력부족과 기타 사유로, 군지역은 인력부족과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모르거나 기타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재정자립도측면에서 보나 인구비중의 차이측면에서 보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고, 오히려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인력부족이나 작성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미작성 이유  
(단위: 개)

	기존사업으로 충분	인력부족	기본계획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름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	-	2	-	-	2
시·구	2	4	1	1	4	12
군	1	7	1	5	7	21
재정자립도						
20% 미만	1	6	2	5	4	18
20~50%	2	6	-	-	6	14
50% 이상	-	1	-	1	1	3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2	10	2	6	10	30
20% 이상	1	3	-	-	1	5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	5	1	2	6	16
14% 이상	1	8	1	4	5	19

####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여부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지역에서 현존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11〉 참조).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거나, 임시적 TF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현존조직을 그대로 개편없이 활용하고 있다. 그 반면에, 시구나 군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현존조직을 활용하고 있고, 응답지역의 1~2개정도가 임시적 TF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재정자

립도측면에서 보나 인구비중의 차이측면에서 보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에는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신규조직을 구성한 지역은 응답지역 중에서는 한 곳도 없다.

〈표 3-11〉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여부

(단위: 개)

	현존 조직 활용	임시적 TF	일부는 기존조직, 일부는 신규 전담조직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신규조직 구성	계
지역별					
광역시·도	5	1	4	-	10
시·구	21	1	-	-	22
군	25	2	-	-	27
재정자립도					
20% 미만	25	2	-	-	27
20~50%	21	1	3	-	25
50% 이상	5	1	1	-	7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45	2	4	-	51
20% 이상	6	2	-	-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3	2	4	-	29
14% 이상	28	2	-	-	30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현존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지역에서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표 3-12> 참조). 지역별로는 시구지역이 광역시도나 군지역보다 월등하게 인력 및 예산부족을 지적하였는데, 재정자립도측면에서 보면, 50%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역에서 인력 및 예산부족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비중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이외에는 시간적여유의 부족이나 기존조직으로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견을 유추하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현존 조직 활용이유  
(단위: 개)

	기존 조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	시간적 여유 부족	인력, 예산부족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	1	3	1	5
시·구	2	-	18	-	20
군	2	2	18	4	26
재정자립도					
20% 미만	2	2	20	2	26
20-50%	2	-	16	2	20
50% 이상	-	1	3	1	5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4	2	34	5	45
20% 이상	-	1	5	-	6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	1	18	2	23
14% 이상	2	2	21	3	28

####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향후 구성계획 여부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향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지역마다 상이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표 3-13> 참조). 우선, 지역별로는 광역시도인 경우에는 응답지역의 대부분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시구지역이나 군지역의 경우는 당분간 구성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계획이 없다’는 비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구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부족으로 인한 전담인력과 예산투입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구비중측면에서 보면, 연소인구비중이 낮은 지역이거나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구성계획이 없다는 비중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적지 않은 문제를 시사해주고 있다.

〈표 3-13〉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향후 구성계획

(단위: 개)

	당분간 계획 없음	계획 있음	계
지역별			
광역시·도	1	4	5
시·구	17	3	20
군	25	1	26
재정자립도			
20% 미만	24	1	25
20~50%	17	4	21
50% 이상	2	3	5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39	6	45
20% 이상	4	2	6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17	6	23
14% 이상	26	2	28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광역시도는 본청과 보건소조직을 활용하고 있지만, 시군구지역의 경우는 보건소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3-14> 참조).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조직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건소조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지역별로 보면, 시구지역이 군지역이나 광역시도지역에 비하여 보건소조직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재정자립도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보건소조직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시구지역에 비하여 보건소의 업무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4〉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유형

(단위: 개)

	본청에만 구성	본청과 보건소에 구성	보건소에만 구성	기타	계
지역별					
광역시·도	3	-	1	1	5
시·구	-	-	1	-	1
군	-	-	1	1	2
재정자립도					
20% 미만	-	-	1	1	2
20~50%	2	-	1	1	4
50% 이상	1	-	1	-	2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2	-	2	2	6
20% 이상	1	-	1	-	2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3	-	2	1	6
14% 이상	-	-	1	1	2

〈표 3-15〉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작성, 추진을 위한 보건소 조직 활용여부

(단위: 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지역별			
광역시·도	6	4	10
시·구	21	1	22
군	16	11	27
재정자립도			
20% 미만	19	8	27
20~50%	19	6	25
50% 이상	5	2	7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38	13	51
20% 이상	5	3	8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2	7	29
14% 이상	21	9	30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은 전무하고 저출산대책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표 3-16〉 참조). 지역별로 보면, 고령화 및 저출산관련대책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담당하게 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이고, 일부 군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대책 뿐만 아니라 고령화대책의 일부도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자체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보건소 조직의 활용정도

(단위: 개)

	거의 전적으로 보건소 의존	저출산관련 모든 업무	고령화관련 모든 업무	저출산관련 일부대책	고령화관련 일부대책	계
지역별						
광역시·도	1	-	-	4	-	5
시·구	2	8	-	6	-	16
군	-	4	-	9	2	15
재정자립도						
20% 미만	2	2	-	11	1	16
20~50%	1	7	-	6	1	15
50% 이상	-	3	-	2	-	5
인구비중						
14세 이하 인구						
20% 미만	2	10	-	18	2	32
20% 이상	1	2	-	1	-	4
65세 이상 인구						
14% 미만	2	7	-	9	-	18
14% 이상	1	5	-	10	2	18

####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지역별 담당부서 실태

광역시도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내용별 담당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부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부문에서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17> 참조).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에서는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아예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서는 기존조직의 활용, 또는 담당부서의 부재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존조직의 활용, 또는 담당부서의 부재가 대부분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조성부문에서는 교육홍보 등의 사업이 중심이어서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전담조직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보다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 추진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대책에 비하여 고령화대책의 사업내용이 보다 광범위한데다가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시구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내용별 담당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아예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표 3-18> 참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부문에서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및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부문에서의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내용이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의 조직체계내에서 이미 수행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 이외의 사업내용은 새롭게 추진되어야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부문이나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 등에서도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구지역의 경우에도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보다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 추진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 실태(10개 광역시·도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합계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0	-	-	1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9	-	1	10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0	-	-	10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7	-	3	10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7	-	3	1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0	-	-	10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0	-	-	10
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5	-	5	10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8	-	2	10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	-	8	1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8	-	2	10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0	-	-	1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7	1	2	10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3	1	6	1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7	1	2	10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7	1	2	10

〈표 3-17〉 계속

(단위: 개, %)

기본계획 사업내용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6	1	3	1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	7	10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4	-	6	1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	-	8	1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	-	9	10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	-	9	10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	-	9	10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1	-	9	10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1	-	9	10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	9	10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	-	9	10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5	2	3	10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5	2	3	10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5	2	3	10

〈표 3-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 실태(22개 시·구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20	-	2	22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1	-	1	22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9	-	3	22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6	-	6	22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5	-	7	2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5	2	5	22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8	1	3	22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5	-	7	22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7	1	4	22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3	-	9	2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21	-	1	22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21	-	1	22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18	-	4	22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3	-	9	22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3	-	9	22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18	-	4	22

〈표 3-18〉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3	-	9	2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0	-	12	22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9	-	13	22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6	-	16	22
2-2. 산업해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6	-	16	22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4	-	18	22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4	-	18	22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4	-	18	22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5	-	17	22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5	-	17	22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5	-	17	22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14	-	8	22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2	-	10	22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2	-	10	22

군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내용별 담당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기존조직을 활용하거나 아예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표 3-19> 참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부문에서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및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부문에서의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내용이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의 조직체계내에서 이미 수행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 이외의 사업내용은 새롭게 추진되어야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부문이나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 등에서도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구지역의 경우에도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보다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 추진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 실태(27개 군 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24	-	3	2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4	-	3	27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5	-	2	27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7	-	10	27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7	-	10	2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3	1	3	27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21	1	5	27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4	-	13	27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2	-	5	27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5	-	12	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23	-	4	27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23	-	4	27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0	-	7	27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4	-	13	2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3	-	14	27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22	-	5	27

〈표 3-19〉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7	1	9	27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4	-	13	27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10	-	17	27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2	-	15	27
2-2. 산업해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9	-	19	27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5	1	21	27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6	-	21	27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5	-	22	27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8	-	19	27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8	-	19	2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8	-	19	27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15	1	11	27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3	1	13	27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3	1	13	27

##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지역별 사업의 중요성 인식수준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시도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표 3-20> 참조). 다만, 무응답으로 처리된 사업내용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의 보장,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의 조성 등 고령사회 삶의 질의 향상 기반구축부문과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문에 대한 추진이 광역시도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시도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의 조성,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등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협조사업 내용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한편, 기존 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저출산대책부문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부문의 사업내용은 다른 부문의 사업내용에 비하여 일치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타 부문의 사업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21> 참조).

결국, 기존의 사업과 중첩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의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0〉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광역시·도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	7	3	-	1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8	2	-	10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9	1	-	10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	6	2	1	10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4	5	-	1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6	3	1	10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7	2	1	10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4	2	3	1	10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	4	4	1	10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4	1	3	2	1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2	5	3	-	10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7	2	-	1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	3	5	-	10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2	4	2	1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	2	5	1	10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1	4	5	-	10

〈표 3-20〉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	2	5	-	1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3	3	1	10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3	1	5	1	1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4	1	5	-	1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5	1	2	2	10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6	-	2	2	10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6	-	1	3	10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7	-	1	2	10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5	-	4	1	10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5	-	4	1	10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5	-	4	1	10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1	6	3	-	10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	5	4	-	10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5	4	-	10

〈표 3-21〉 기존 사업과의 일치도(광역시·도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	8	2	-	1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7	3	-	10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7	3	-	10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	2	4	3	10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1	8	-	1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3	5	1	10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3	7	-	10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4	2	1	3	10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	5	2	2	10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4	1	2	3	1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2	4	4	-	10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7	2	-	1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	2	5	1	10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1	3	4	1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	1	5	2	10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1	3	4	2	10

〈표 3-21〉 계속

(단위: 개, %)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	1	4	2	1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2	1	4	10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3	1	3	3	1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4	1	3	2	1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5	1	1	3	10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6	-	1	3	10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6	-	-	4	10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7	-	-	3	10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5	-	2	3	10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5	-	2	3	10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5	-	2	3	10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2	3	3	10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	2	3	3	10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1	3	4	10

시구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3-22> 참조). 그렇지만, 무응답으로 처리된 사업내용이 전체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마다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그만큼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의 조성부문이나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부문에 대한 추진이 광역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구지역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광역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의 조성,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등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협조사업 내용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한편, 기존 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광역시도와 다르게 전체 부문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대책부문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부문의 사업내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문의 사업내용에서 기존사업과의 불일치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재개편내지는 신규조직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표 3-23> 참조).

〈표 3-22〉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시·구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	12	9	-	22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13	8	-	22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12	9	-	22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2	8	12	-	22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	6	12	-	2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	10	10	-	22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2	6	14	-	22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4	7	9	2	22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4	10	7	1	22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4	8	5	5	2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3	10	8	1	22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3	11	8	-	22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3	4	15	-	22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5	4	12	1	22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5	3	10	4	22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4	3	15	-	22

〈표 3-22〉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	2	15	1	2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5	2	13	2	22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6	-	11	5	22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6	1	11	4	22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6	-	10	6	22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5	1	8	8	22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5	-	7	10	22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5	-	5	12	22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4	1	12	5	22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5	-	11	6	22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5	-	8	9	22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1	10	10	1	22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	9	11	1	22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9	11	1	22

〈표 3-23〉 기존사업과의 일치도(시·구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2	5	12	3	22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	6	11	3	22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6	10	4	22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3	1	14	4	22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	1	13	3	2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	4	13	2	22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3	3	12	4	22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6	2	5	9	22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6	1	8	7	22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6	1	5	10	2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4	5	10	3	22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4	6	10	2	22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4	2	12	4	22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6	1	8	7	22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6	1	5	10	22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5	2	13	2	22

〈표 3-23〉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6	-	9	7	2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	-	3	12	22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7	-	2	13	22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 계 확립	7	-	6	9	22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7	-	4	11	22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6	-	2	14	22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6	-	1	15	22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6	-	1	15	22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6	-	3	13	22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6	-	1	15	22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6	-	1	15	22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3	11	6	22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3	1	10	8	22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3	1	9	9	22

군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사업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대책부문에서 무응답으로 처리된 사업내용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저출산대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24> 참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는 군지역의 수준에서는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역시 광역시도와 다르게 전체 부문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대책부문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부문의 사업내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문의 사업내용에서 기존사업과의 불일치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의 재개편내지는 신규 조직의 구축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표 3-25> 참조).

〈표 3-24〉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군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	20	7	-	2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17	10	-	27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7	10	-	27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	8	18	1	27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8	18	1	2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10	16	1	27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	7	18	1	27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2	11	11	3	27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3	11	13	-	27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	6	16	3	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1	15	11	-	27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13	11	2	27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	8	16	1	27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	6	19	1	2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	4	18	4	27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조건 조성	1	11	15		27

〈표 3-24〉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9	18	-	27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9	15	3	27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	7	12	8	27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	8	14	6	27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	4	16	6	27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2	2	15	8	27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2	3	14	8	27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2	2	13	10	27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	7	16	4	27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4	18	5	2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3	19	5	27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	13	11	3	27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14	12	1	27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11	15	1	27

〈표 3-25〉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군지역의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1	7	16	3	2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4	20	2	27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10	13	3	27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2	2	14	9	27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2	16	8	2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1	24	1	27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	1	23	2	27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3	3	11	10	27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	5	17	4	27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	2	12	11	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1	5	16	5	27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9	13	4	27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3	2	17	5	27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1	13	11	2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	2	11	12	27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1	6	14	6	27

〈표 3-25〉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3	12	10	27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2	1	11	13	27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2	1	13	11	27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	-	10	15	27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2	-	11	14	27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	-	7	17	27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3	-	7	17	27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3	-	6	18	27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2	2	9	14	27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2	2	8	15	2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2	1	10	14	27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2	13	10	27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	2	12	11	27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2	11	12	27

재정자립도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령화대책부문에서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이나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써의 육성부문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낮게 인식되고 있는 부문이다(<표 3-26> 참조).

그리고 동 지역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기존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사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출산대책부문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부문,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7> 참조).

한편, 재정자립도수준이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의 일부와 관련한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대책부문에서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이나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부문,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써의 육성부문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표 3-28> 참조).

그리고 동 지역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기존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사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시 저출산대책부문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부문,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9> 참조).

〈표 3-26〉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	23	8	-	32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22	9	-	32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21	10	-	32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3	16	12	1	32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	11	16	-	3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	17	13	-	32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2	14	16	-	32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9	11	11	1	32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6	14	11	1	32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9	9	8	6	3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5	17	9	1	32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4	18	10	-	32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5	8	19	-	32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7	7	17	1	32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7	5	17	3	32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6	9	17	-	32

〈표 3-26〉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II.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6	8	17	1	3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	7	17	1	32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4	16	4	32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9	3	17	3	32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0	3	13	6	32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0	1	14	7	32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0	1	11	10	32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11	1	8	12	32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8	2	17	5	32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9	1	16	6	32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9	1	13	9	32
<b>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17	12	1	32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	15	14	1	32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13	16	1	32

〈표 3-27〉 기존사업과의 일치도(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2	15	12	3	32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	15	12	3	32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16	10	4	32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4	4	16	8	32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6	2	18	6	3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4	6	20	2	32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3	5	20	4	32
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0	4	5	13	32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7	8	9	8	32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0	2	6	14	3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6	9	11	6	32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5	14	9	4	32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6	4	17	5	32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8	2	9	13	32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8	2	10	12	32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6	5	15	6	32

〈표 3-27〉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8	2	13	9	32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9	2	6	15	32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9	1	6	16	32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0	1	10	11	32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1	1	7	13	32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1	-	3	18	32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1	-	1	20	32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12	-	1	19	32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10	-	6	16	32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0	-	4	18	32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0		5	17	32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4	4	13	11	32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5	2	13	12	32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5	1	10	16	32

〈표 3-28〉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	16	11	-	2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16	11	-	27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7	10	-	27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	6	20	1	27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7	19	1	2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9	16	2	27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	6	18	2	27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	9	12	5	27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	11	13	1	27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	6	16	4	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1	13	13	-	27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13	11	2	27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	7	17	1	27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1	5	18	3	2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	4	16	6	27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	9	18	-	27

〈표 3-28〉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II.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5	21	-	27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	7	14	5	27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1	4	12	10	27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	5	13	7	27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2	2	15	8	27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	2	11	11	27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3	2	11	11	27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3	1	11	12	27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1	6	15	5	27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3	17	6	2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	2	18	6	27
<b>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	12	12	3	27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13	13	1	27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12	14	1	27

〈표 3-29〉 기존사업과의 일치도(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1	5	18	3	27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2	22	2	27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7	16	3	27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2	1	16	8	27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2	19	5	2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2	22	2	27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	2	22	1	27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3	3	12	9	27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	3	18	5	27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	2	13	10	27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1	5	19	2	27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8	16	2	27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3	2	17	5	27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1	15	9	27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	2	11	12	27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1	6	16	4	27

〈표 3-29〉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	2	12	10	27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3	1	9	14	27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3	1	12	11	27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3	-	9	15	27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3	-	9	15	27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4	-	7	16	27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4	-	7	16	27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4	-	6	17	27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3	2	8	14	27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3	2	7	15	27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3	1	8	15	27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3	14	8	27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	3	12	10	27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3	13	9	27

이번에는 14세미만의 연소인구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소인구비중이 20%이상인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의 일부와 관련한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표 3-30> 참조).

그리고 동 지역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기존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사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출산대책부문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1> 참조).

한편, 연소인구비중이 20%미만인 지역에서는 저출산대책부문에서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부문의 사업내용은 중요도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표 3-32> 참조).

그리고 동 지역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기존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사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시 저출산대책부문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부문,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3> 참조).

〈표 3-30〉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14세 미만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	4	3	-	8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5	2	-	8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5	2	-	8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	4	3)	-	8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2	4	2	-	8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5	2	-	8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	4	3	-	8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4	2	2	-	8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	5	1	-	8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3	2	-	3	8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4	3	1	-	8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3	4	1	-	8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4	1	3	-	8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4	1	3	-	8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4	1	2	1	8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2	3	3		8

〈표 3-30〉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	2	2	1	8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4	1	3	-	8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4	-	2	2	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4	1	1	2	8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4	1	-	3	8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5	-	1	2	8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5	-	-	3	8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5	-	-	3	8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4	-	3	1	8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4	-	2	2	8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4	-	1	3	8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	4	3	1	8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3	4	1	8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2	5	1	8

〈표 3-31〉 기존사업과의 일치도(14세 미만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1	4	2	1	8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4	1	2	8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4	1	2	8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	2	3	2	8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2	1	4	1	8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3	3	1	8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	2	4	1	8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4	1	2	1	8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2	3	3	-	8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3	1	2	2	8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3	2	2	1	8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2	3	2	1	8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3	1	3	1	8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3	1	3	1	8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3	1	3	1	8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2	2	3	1	8

〈표 3-31〉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	1	2	2	8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4	1	1	2	8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4	-	1	3	8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4	1	1	2	8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4	1	1	2	8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5	-	-	3	8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5	-	-	3	8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5	-	-	3	8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4	-	1	3	8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4	-	1	3	8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4	-	1	3	8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1	2	3	2	8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	1	3	3	8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	3	4	8

〈표 3-32〉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14세 미만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	35	16	-	51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33	18	-	51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33	18	-	51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2	18	29	2	51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3	14	33	1	51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21	27	2	51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2	16	31	2	51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6	18	21	6	51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6	20	23	2	51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7	13	24	7	51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2	27	21	1	51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2	27	20	2	51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3	14	33	1	51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4	11	32	4	51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4	8	31	8	51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4	15	32	-	51

〈표 3-32〉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4	11	36	-	51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4	13	28	6	51
1-3. 외국인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5	8	26	12	51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7	7	29	8	51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8	4	28	11	51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8	3	24	16	51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8	3	22	18	51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9	2	19	21	51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5	8	29	9	51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6	4	31	10	51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6	3	30	12	51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25	21	3	51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	25	23	1	51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23	25	1	51

〈표 3-33〉 기존사업과의 일치도(14세 미만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2	16	28	5	51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2	13	33	3	51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19	25	5	51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5	3	29	14	51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5	3	33	10	51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4	5	39	3	51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3	5	38	5	51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9	6	15	21	51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6	8	24	13	51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9	3	17	22	51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4	12	28	7	51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4	19	23	5	51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6	5	31	9	51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7	2	21	21	51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7	3	18	23	51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5	9	28	9	51

〈표 3-33〉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8	3	23	17	51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8	2	14	27	51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	-	-	-	51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 계 확립	9	-	18	24	51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0	-	15	26	51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0	-	10	31	51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0	-	8	33	51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11	-	7	33	51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9	2	13	27	51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9	2	10	30	51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9	1	12	29	51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5	5	24	17	51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6	4	22	19	51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6	4	20	21	51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노인인구비중이 14%이상인 지역에서는 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사업에서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업으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에서는 중요성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4> 참조).

그리고 동 지역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기존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사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출산대책부문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5> 참조).

한편, 노인인구비중이 14%미만인 지역에서는 고령화대책부문보다는 저출산대책부문에서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6> 참조).

그리고 동 지역을 기준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의 기존사업과의 일치도 수준을 살펴보면, ‘기존사업과 전혀 유사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시 저출산대책부문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 기존사업과의 일치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7> 참조).

〈표 3-34〉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	18	12	-	3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17	13	-	30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8	12	-	30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	7	22	1	30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5	23	1	3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7	21	2	30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	5	22	2	30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3	8	14	5	30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3	10	16	1	30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3	5	17	5	3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1	14	15	-	30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1	15	13	1	3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	6	21	1	30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3	22	3	3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	3	19	6	30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2	9	19		30

〈표 3-34〉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5	24	-	3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	6	18	5	30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1	4	13	12	3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	5	15	8	3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2	3	16	9	30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	1	14	12	30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3	1	14	12	30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3	1	11	15	30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1	5	18	6	30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2	20	7	30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	2	19	8	30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	14	13	3	30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14	15	1	30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12	17	1	30

〈표 3-35〉 기존사업과의 일치도(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	8	19	3	30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6	22	2	30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1	16	3	30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1	2	18	9	30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2	21	6	30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2	26	2	30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2	25	3	30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3	3	10	14	30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1	4	18	7	30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2	2	13	13	30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	6	22	2	30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	10	18	2	30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2	2	21	5	30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2	1	15	12	30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2	2	11	15	30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1	6	18	5	30

〈표 3-35〉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3	14	11	30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2	1	10	17	30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2	1	12	15	30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 계 확립	2	-	11	17	30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2	-	12	16	30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3	-	7	20	30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3	-	7	20	30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3	-	6	21	30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2	2	9	17	30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2	2	7	19	30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2	1	9	18	30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1	4	17	8	30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1	3	16	10	30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3	15	11	30

〈표 3-36〉 지자체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65세 이상 비율이 14% 미만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	21.4	7	-	29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21	7	-	29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20	8	-	29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3	15	10	1	29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	13	12	-	29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2	19	8	-	29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2	15	12	-	29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7	12	9	1	29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5	15	8	1	29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7	10	7	5	29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5	16	7	1	29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4	16	8	1	29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5	9	15	-	29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6	9	13	1	29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6	6	14	3	29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4	9	16	-	29

〈표 3-36〉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합계
<b>III.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6	8	14	1	29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7	8	13	1	29
1-3. 외국인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8	4	15	2	29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9	3	15	2	29
2-2. 산업제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0	2	12	5	29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0	2	11	6	29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0	2	8	9	29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11	1	8	9	29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8	3	14	4	29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9	2	13	5	29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9	1	12	7	29
<b>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2	15	11	1	29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	14	12	1	29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	13	13	1	29

〈표 3-37〉 기존사업과의 일치도(65세 이상 비율이 14% 미만인 경우)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3	12	11	3	29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	11	12	3	29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	12	10	4	29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5	3	14	7	29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6	2	16	5	29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5	6	16	2	29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4	5	17	3	29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10	4	7	8	29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7	7	9	6	29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0	2	6	11	29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7	8	8	6	29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6	12	7	4	29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7	4	13	5	29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8	2	9	10	29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8	2	10	9	29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6	5	13	5	29

〈표 3-37〉 계속

(단위: 개)

기본계획 사업내용	무응답	① 매우 일치한다	② 유사하다	③ 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 않음	합계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9	1	11	8	29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0	2	5	12	29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 통합 기반 조성	10	1	6	12	29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1	1	8	9	29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2	1	4	12	29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2	-	3	14	29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2	-	1	16	29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13	-	1	15	29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11	-	5	13	29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1	-	4	14	29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1	-	4	14	29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1. 전략적 교육홍보	5	3	10	11	29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6	2	9	12	29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6	1	8	14	29

## 제 2 절 사례분석 결과의 요약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작성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업무는 현재 여러 기존조직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담당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본계획의 추진에 맞게 유사 및 산발조직을 통폐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 수준보다는 과 수준에서 신규조직이 구성되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내용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는 응답한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대체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미작성한 이유로 인력과 예산부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계획의 작성, 추진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축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내용별 담당부서를 보면, 대부분이 기존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출산대책보다는 고령화대책부문에서 담당부서가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내용별 중요도의 인식수준을 보면, 저출산대책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고령화대책부문에서는 기존의 건강부장부문과 사회활동참여와 같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은 상당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에서는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 4 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 제 1 절 지방행정조직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직구성원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분석은 원래 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성질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적성(適性)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분석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의 기초를 세우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새로운 직무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존의 업무와 신규 업무를 구분하여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게 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각 지자체의 실정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지자체마다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응책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유보적이거나 관심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지자체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조직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현황

2006년 1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실, 국 및 본부의 수가 서울은 13개, 경기도 17개를 제외하고는 8~12개의 범위내에서 설치되어 있고, 과 및 담당관의 수에서는 서울이 99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70개, 부산 54개로 나타나고 있다(표 4-1 참조). 그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별 국과 과의 설치내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국, 과의 명칭이 각 지자체의

지역실정과 특성을 감안하여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시도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즉, 보건복지관련 국에 노인복지관련 과를 설치한 지역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이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다른 과내 하나의 계 정도에서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화정도가 심각한 전남, 전북 및 경북지역, 그리고 지방재정사정이 양호한 서울, 대전 및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의 정책관심도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현황(2006년. 1월 현재)

	실, 국, 본부				과, 담당관			
	계	실	국	본부	계	국장급	과	담당관
서울특별시	13	1	11	1	99 (21)	13 (3)	57 (5)	29 (13)
부산광역시	12	2	9	1	54 (3)	5	40 (2)	9 (1)
대구광역시	12	2	9	1	48 (4)	3	37	8 (4)
인천광역시	11	1	9	1	47 (2)	4	38	5 (2)
광주광역시	10	1	8	1	41 (3)	3	33 (2)	5 (1)
대전광역시	10	1	8	1	42 (1)	3	34	5 (1)
울산광역시	9	1	7	1	40 (1)	3	33	4 (1)
경기도	17	3	13	1	70 (2)	1	54 (1)	15 (1)
강원도	10	1	8	1	42 (4)	4	36 (4)	2
충청북도	8	1	6	1	38 (2)	3	31 (1)	4 (1)
충청남도	9	1	7	1	40( 4)	4	29	7 (4)
전라북도	10	1	7	2	41 (3)	3	33 (2)	5 (1)
전라남도	10	1	8	1	43 (2)	4 (1)	35 (1)	4
경상북도	10	2	7	1	46 (4)	1	37 (1)	8 (3)
경상남도	9	1	7	1	43 (2)	3	35 (1)	5 (1)
제주도	10	1	8	1	35 (4)	1	28	6 (4)
합계	170	21	132	17	769 (62)	58	590 (20)	121 (38)

주: ( )내는 한시지구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편람, 2006.1

〈표 4-2〉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구성 현황(2006년. 1월 현재)

	국, 과명	비고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인사과, 행정과, 시민협력과 재무국: 재무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복지건강국: 사회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보건정책과 산업국: 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생활경제과, 고용대책과, 농수산유통과, DMC담당관 문화국: 문화과, 문화재과, 관광과, 체육과 환경국: 환경과, 청소과, 대기과, 수질과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공원과, 조경과, 민주공원조성추진반 교통국: 교통계획과, 대중교통과, 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담당관, 교통지도단속반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하수계획과, 치수과 주택국: 주택기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경영기획실 뉴타운사업본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방방재본부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공업기술과, 노동정책과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교통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국제협력과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청소관리과, 하수도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녹지공원과, 지적과 건설방재국: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방재과 항만농수산국: 항만정책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농업행정과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APEC 준비단
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자원봉사과, 회계과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국제협력과, 섬유패션과, 산업지원기계금속과, 농수산유통과 과학기술진흥실: 과학기술과, 산업기술과, 정보통신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버스개혁기획단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수질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지적과 건설방재국: 건설산업진흥과, 도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기획관리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단 소방본부

〈표 4-2〉 계속

	국, 과명	비고
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농정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복지보건국: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 여성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도시균형건설국: 건설기획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폐기물자원과, 공단환경관리과, 물관리과, 녹지조성과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주택건축과, 지적과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지원과, 항만공항물류과, 수산과	기획관리실 소방방재본부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기반조성과, 문화수도지원과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과, 산업진흥과, 전략산업과, 과학기술과, 농정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건설국: 건설행정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건축주택과 교통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교통관리과 관광체육국: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5/18선양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수질보전과, 폐기물자원과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지적과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지적과 경제과학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과학기술과, 농정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 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환경국: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재해복구과, 지적과	기획관리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방본부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투자유치단 환경국: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문화정책실: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전국체전기획단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미관과, 지적과	기획관리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방본부

〈표 4-2〉 계속

	국, 과명	비고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산업과 농정국: 농업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물, 산림녹지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정책과 환경국: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환경자원과, 맑은물관리과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운영개선과, 광역교통기획단, 건설계획과, 재난민방위과 도시주택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신도시개발지원단,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보육청소년과	기획관리실 소방재난본부 행정2부지사(가족여성정책실,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전국, 지역개발국)
강원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지원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추진단,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 맑은물보전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이동정책과, 보건위생과 농정산림국: 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산림정책과, 산림관리과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과, 지식산업과, 관광지역개발과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 주택지적과, 도로교통과, 재난관리과, 방재복구과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미래기획단 동계올림픽유치단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혁신분권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경제통상국: 경제과, 첨단산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위생과, 수질관리과 농정국: 농정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건축문화과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민방위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 지적과, 교통과, 도로과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표 4-2〉 계속

	국, 과명	비고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정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농림수산업국: 농정유통과, 농산과, 기반조성과, 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업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수질관리과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주택도시과, 치수방재과, 지적과, 도로교통과	기획관리실 시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소방본부
전라북도	경제통상실: 경제항만정책관실,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산업과, 관광진흥과 농림수산업국: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업기반과, 축산행정과, 수산과, 산림행정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보건위생과, 수질보전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노인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건설교통방재국: 건설행정과, 치수재해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행정과, 토지정보과	기획혁신전략본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방본부
전라남도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행정혁신국: 총무과, 행정과, 혁신분권과,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개발과, 관광진흥과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한방과 농정국: 농업기반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축정과, 산림소득과 해양수산환경국: 해양항만과, 어업생산과, 환경보전과, 수질개선키 건설재난관리국: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개발건축과, 재난민방위과, 복구지원과, 토지관리과	기획관리실 기업도시기획단 소방본부
경상북도	경제통상실: 경제교통정책과, 기업노동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과, 재정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재과, 체육청소년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전국체전기획단 과학정보산업국: 과학기술진흥과, 지역산업진흥과, 정보통신과 농정국: 농정과, 농산과, 농업기반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환경산림수산업국: 환경관리과, 수질보전과, 산림정책과, 산림보호과, 해양수산업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노인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건설도시재난국: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하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주택지적과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표 4-2> 계속

	국, 과명	비고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행정과,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토지정보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항만수산물과, 어업생산과 환경녹지교통국: 환경정책과, 수질개선과, 산림녹지과, 교통정책과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 치수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과,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국제자유도시과,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 재정과, 미래산업과 문화스포츠국: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교통행정과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환경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복구지원과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농수산축산국: 친환경농정과, 감귤과, 해양수산물과, 축정과	기획관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 기획단 행정구조개편추진기 획단 소방재난관리본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편람, 2006.1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 현황

<표 4-3>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사업들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명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3장에서 살펴본 지자체대상의 설문조사 시 응답한 지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부문의 경우 보건소(55개 지역)와 보건복지여성국(53개 지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부문은 복지환경국 및 사회산업국(22개 지역)이나 보건복지여성국·복지여성국(26개 지역),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부문은 복지환경국(15개 지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은 보건복지여성국(15개 지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별로 보면, 모든 부문에서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관련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들이 현재 각 부서에서 산재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담당부서 실태(응답 지자체 기준)

기본계획 사업내용	1. 담당부서 국명	2. 담당부서 과명	3. 담당부서 유형
I	총무국 (13)	사회복지과 (171)	여성정책 (108)
	교육청 (18)	총무과 (7)	인구정책 (1)
	보건소 (55)	농수산과 (2)	농경팀 (1)
	보건의료원 (2)	보건사업 (5)	건강증진 (19)
	여성정책관실 (5)	학무과 (1)	청소년자원봉사 (2)
	복지환경국 (18)	환경복지 (17)	가족보건 (9)
	문화체육관광국 (7)	보건소 (37)	가정복지 (36)
	자치행정국 (18)	자치행정 (3)	방문보건 (2)
	사회산업국 (7)	교육청 (13)	청소년 (25)
	시민봉사국 (5)	문화공보 (3)	아동복지 (9)
	행정지원국 (24)	여성정책과 (26)	건강가정 (1)
	경제사회국 (6)	보건위생과 (6)	보육 (18)
	관할 군 (3)	보건과 (3)	보건소 (1)
	부시장실 (1)	기획관리과 (2)	여성아동 (25)
	보건복지여성국 (53)	주민복지 (14)	여성청소년 (6)
	사회산업국 (9)	문화관광 (11)	체육청소년 (10)
	사회복지국 (1)	복지문화과 (4)	지역보건계 (3)
	행정관리국 (1)	가족보건 (1)	모자보건담당 (6)
	경제산업국 (1)	의무과 (4)	행정 (1)
	산업건설국 (1)	여성복지과 (3)	새마을체육 (1)
	교통국 (1)	청소년 (2)	여성가족 (3)
	도시주택국 (1)	문화체육과 (1)	시정 (2)
	관광문화국 (2)	산업과 (1)	체육진흥 (2)
	생활지원국 (5)	예방접종 (1)	아동보육 (22)
	노동청 (1)	보건의료원 (1)	청소년 교육 (2)
	농림수산물국 (2)	복지정책과 (3)	진료계 (2)
	기획관리실 (1)	농수산유통과 (3)	아동청소년 (7)
	관광문화국 (3)	문화산업과 (1)	여성교육 (4)
	문화체육국 (2)	투자진흥과 (3)	보육지원계 (2)
	생활복지국 (6)	복지청소년과 (1)	학무과 (4)
		체육청소년과 (7)	가족보건 (5)
		보건위생과 (14)	예방의약 (11)
		노동청 (1)	농정기획 (4)
	노인복지 (1)	보육복지 (3)	

주: ( )내는 응답 지자체수

〈표 4-3〉 계속

기본계획 사업내용	1. 담당부서 국명	2. 담당부서 과명	3. 담당부서 유형
I		농업기본정책 (1) 초중등교육과 (1) 재무과 (1) 초등교육과 (1) 과학교육정보화 (1) 복지환경과 (4) 농업정책과 (2) 인재양성과 (1) 중등교육과 (2) 여성가족과 (17) 복지사업과 (2) 주민생활지원과 (6) 주민서비스과 (6) 가정복지 (12) 건강관리 (1) 문화체육과 (7) 양성평등과 (7) 보건지도 (1) 문화청소년 (1) 학무과 (1) 사회사업 (2) 복지행정 (4) 농정 (2)	장애아동 (3) 예방접종 (1) 보건행정 (1) 관광기획 (1) 인사 (1) 저출산대책 (1) 농수산유통 (1) 아동 (2) 평생교육 (2) 지역보건 (2) 가족지원담당 (2) 청소년 육성 (3) 건강관리 (6) 교육지원 (3) 체육 (2) 진료팀 (1) 생활지도팀 (1) 장학사 (1) 농촌지원담당 (1) 교사 (1) 계약 세입 (1) 초등교육 (1) 과학교육정보 (1) 농어촌복지 (1) 건강관리 (3) 유아특수교육팀 (1) 농촌인력담당 (1) 저출산대책담당 (2) 교육 (1) 교통행정 (1) 문화예술 (2) 노인복지 (4) 농업소득담당 (1) 재활복지 (3)

〈표 4-3〉 계속

기본계획 사업내용	1. 담당부서 국명	2. 담당부서 과명	3. 담당부서 유형
II	총무국 (9) 문화공보국 (1) 복지환경국 (22) 문화관광국 (6) 건설교통국 (2) 자치행정국 (19) 사회산업국 (22) 시민봉사국 (9) 경제사회국 (5) 보건소 (17) 평생학습 추진단 (1) 보건복지여성국 (15) 복지여성 (11) 보건의료원 (2) 도시교통 (1) 행정지원과 (9) 생활지원국 (6) 행정관리국 (1) 건설재난관리국 (1) 농정국 (1) 중앙정부 (1) 노동부 (1) 재정부 (1) 도시관리국 (1) 교통부 (1) 생활복지 (3)	사회복지과 (147) 보건소 (27) 환경복지과 (18) 보건위생 (13) 체육청소년 (5) 건축문화 (1) 교통 (1) 문화예술 (1) 주민복지 (10) 문화관광 (2) 도시건축 (1) 문화공보실 (2) 총무과 (1) 교육청 (1) 복지문화과 (9) 사회과 (9) 문화체육과 (2) 평생학습 (1) 문화관광 (4) 민원 (2) 노인장애인 (3) 문화산업 (1) 교통정책 (2) 대중교통과 (2) 주민새마을과 (1) 경제교통과 (1) 문화예술 (1) 체육보건교육 (1) 복지환경과 (6) 주민서비스과 (8) 주민생활지원과 (1) 가정복지과 (6) 복지행정과 (31) 노인복지과 (5)	노인복지 (132) 방문보건 (8) 보건행정 (1) 가정복지 (38) 체육지원 (1) 사회보호 (8) 지역보건 (2) 체육담당 (1) 건강증진 (16) 건축행정 (2) 교통지도 (2) 예술 (1) 예방의약 (1) 여성아동 (2) 체육청소년 (8) 체육지원 (3) 방역 (1) 의무 (1) 가족보건 (1) 경로효친 (9) 교통담당 (1) 주택담당 (2) 경로복지 (12) 노인요양 (1) 의약 (2) 정신보건 (1) 아동복지 (1) 예술진흥 (1) 교사 (1) 건강관리 (5) 버스행정 (1) 교통행정 (1) 농촌지원담당 (1) 교통기획 (1)

〈표 4-3〉 계속

기본계획 사업내용	1. 담당부서 국명	2. 담당부서 과명	3. 담당부서 유형
II		지원교통과 (1) 의무과 (1) 문화체육과 (1) 교통행정과 (1) 체육지원과 (2) 교통과 (1) 투자진흥과 (1) 보건사업과 10 관광기획 (1) 사회사업 (2) 노인장애인복지 (2) 국민연금공단 (1)	공공보건담당 (1) 저출산지원담당 (1) 저출산고령화 정책 (2) 교육운영팀 (1) 여성정책 (1) 생활보장 (2) 고령화정책 4 복지시설 (2) 생활체육 (1) 주거환경 (1) 교통시설 (1)
III	총무국 (6) 여성정책 (1) 자치행정국 11 시민봉사국 (8) 복지환경 (15) 교육청 (3) 평생학습추진단 (4) 사회산업국 (8) 보건복지여성국 (5) 행정관리국 (2) 과학기술 진흥실 (1) 경제산업국 (4) 자치행정 (4) 재정경제 (6) 행정지원국 (6) 보건소 (4) 다른기관추진 (8) 복지여성 (2) 생활복지국 (7)	사회복지 (91) 환경복지 (10) 여성정책 (6) 사회복지 (30) 주민복지 (9) 총무과 (5) 사회과 (9) 산업경제과 (3) 경제과 (1) 국제협력과 (1) 경제정책과 (1) 산업지원기계금속과 (1) 과학기술과 (2) 자치행정과 (2) 평생직업교육과 (1) 농촌생활지원과 (1) 중등교육과 (1) 복지환경과 (1) 주민생활지원과 (1) 주민서비스과 (1) 여성가족과 (3)	여성정책 (31) 장수복지 (14) 노인복지 (40) 기획 (1) 여성복지 (5) 사회보호 (4) 청소년 (3) 여성이동 (7) 복지기획 (2) 지역계획 (1) 가정복지 (22) 상공 (3) 경로효친 (2) 여성활동지원 (2) 지역경제담당 (1) 노사협력금융지원 (1) 지역복지 (2) 교육지원 (3)

〈표 4-3〉 계속

기본계획 사업내용	1. 담당부서 국명	2. 담당부서 과명	3. 담당부서 유형
Ⅲ		경제통상지원단 (2) 노인복지과 (1) 지역경제과 (1) 초등교육과 (2) 기술통상과 (1) 노인장애인복지 (1) 평생학습지원 (2) 기업지원 (6) 투자진흥과 (7) 가정복지 (8) 행정과 (1) 사회사업 (1) 민원전산 (1)	투자유치담당 (4) 장학사 (1) 지역경제팀 (2) 초등교육(교육연구사) (1) 가정복지 (2) 노인 (1) 기업지원 (3) 양성평등 (2) 고용안정 (2) 대내외협력 (1)
Ⅳ	총무국 (6) 복지환경국 (9) 자치행정 (6) 시민봉사국 (3) 경제사회국 (1) 보건복지여성국 (15) 보건소 (13) 행정지원국 (6) 사회산업국 (3) 생활복지국 (3)	사회복지 (73) 주민복지 (3) 환경복지 (5) 복지문화과 (3) 사회과 (3) 교육청 학무과 (1) 보건소 (3) 복지청소년과 (3) 보건위생과 (9) 가정복지 (6) 보건사업 (3) 노인복지 (3) 보건사업과 (3) 복지환경과 보건소 (3) 주민서비스과 (3) 복지행정과 (3) 건강복지 (3)	노인복지 (30) 사회보호 (3) 저출산 고령화정책 (12) 학무과 (1) 여성아동 (1) 가정복지 (12) 복지정책 (6) 장수복지 (3) 사회복지 (9) 여성정책 (5) 건강증진 (4) 지역보건 (3) 보건위생 (3) 예방담당 (3) 사회담당 (1) 건강관리 (1) 복지기획 23 노인 (3) 장애인 (1) 보육관리 (3) 유아복지 (3)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관련 애로사항

그리고 각 응답한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4-4>와 같다.

첫째, 기존 조직체계와의 관계측면에서 보면, 전담팀 또는 총괄조직의 신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담당부서의 부재 또는 산재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록, 전담팀이나 총괄조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팀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기본계획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적구성측면에서 보면,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의 구성 필요, 관련조직간 연계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업무량의 증가는 신규업무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기본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인적구성측면에서는 현재 지자체 직원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로 단순히 설문응답에 따른 판단은 어렵다.

셋째, 예산배분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추진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의 추가사업이 기본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배분을 하면, 예산의 큰 증액없이도 기본계획의 추진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기타 의견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어려움, 시행계획 수립시기의 적시성 문제, 단기적 시각에서의 복지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기틀마련과 파급효과 분석 필요,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대책 강구 및 생산적 복지정책 지향 등이 제시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행정상 간소화가 필요, ②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홍보 및 수혜가 필요, ③ 저출산·고령사회의 피부체감도가 낮아 실질적인 사업구도 방향 교육이 필요, ④ 새로운 대책 마련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보완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 ⑤ 획기적인 정부지원(셋째아 대학등록금 지원 등)등이 필요, ⑥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성격상 당면한 현안업무에 밀려 직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 ⑦ 간부조직의 관심을 제고시켜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4-4〉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부문	지자체의 의견
<p>(1) 기존 조직체계와의 관계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팀 구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부서 부재로 인해 자료수집 및 해당과의 관심도 부족(광역시·도)</li> <li>- 기존의 조직체계로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어려움(군)</li> </ul> </li> <li>○ 총괄조직 신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조직이 기본계획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총괄조직이 신설되지 않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업무처리에 한계(광역시·도, 시)</li> <li>-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총괄부서는 부재(시)</li> <li>- 저출산대책 수립과 고령사회 대비 대책 수립 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할 것을 희망(시)</li> <li>-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타 실, 과, 보건소, 교육청이 연계해야 하는 협조사항이 많아 포괄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조직 필요성 절감(군)</li> </ul> </li> <li>○ 명확하지 않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하지 않은 담당부서로 인해 지시사항은 수행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업무는 불가능(군)</li> </ul> </li> <li>○ 협조체계 구축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과중으로 관련 조직간 협조체계 미흡(시, 군, 구)</li> </ul> </li> <li>○ 추진력이 있는 부서의 소속으로 개편할 필요성(광역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부서, 행정(총무)부서 등으로 소속을 개편</li> </ul> </li> <li>○ 관련부서의 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예, 자치행정국, 도시건설국, 산업경제국 등) 일관성 부족(시)</li> <li>- 기존조직의 업무 분산 적용으로 전담조직 절실(군)</li> </ul> </li> </ul>

〈표 4-4〉 계속

부문	의견
(2)인적구성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조직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와 새로운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함(광역시·도)</li> <li>- 인력증원 없이 업무만 가중됨(군)</li> <li>- 담당 인원이 부족해 자료 수집 및 취합에 오랜 시간이 걸림(시)</li> </ul> </li> <li>○ 전담 인력 구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개발이 필요(시)</li> <li>-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미확보로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의 어려움(광역시·도, 군, 구)</li> <li>- 정원기준 등으로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시)</li> <li>- 향후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시·군과의 연계사무를 위해 인력충원 시급(광역시·도)</li> </ul> </li> <li>○ 관련조직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과 고령화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연계 미흡(시)</li> </ul> </li> <li>○ 신규업무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할 우수인력을 요청하지만, 신규업무를 기피(광역시·도)</li> </ul> </li> </ul>
(3)예산배분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및 별도의 특별회계가 필요(시, 군)</li> <li>○ 국고보조금의 충분한 예산배정으로 지자체의 부담률을 해소시켜 줄 필요(광역시·도)</li> <li>○ 시행계획에 필요한 별도의 국비예산이 필요(광역시·도)</li> <li>○ 지자체 재정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 시행에 따른 자체적인 신규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군)</li> <li>- 놓여준 재정여건상 우선순위 예산 배분이 어려움(군)</li> <li>-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은 지방비 투입만으로는 한계(광역시·도)</li> <li>- 전면 국비 지원 요망(구)</li> <li>- 늘어나는 지방재정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촉구(광역시·도)</li> <li>- 독자적인 사업구상보다는 보조금 사업에 역점을 두게 됨(군)</li> </ul> </li> <li>○ 홍보 예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홍보나 민관학계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군)</li> </ul> </li> </ul>

〈표 4-4〉 계속

부문	의견
(4)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행정상 간소화 필요(군)</li> <li>○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홍보 및 수혜 필요(시)</li> <li>○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어려움(광역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사업이나 시책의 업무량은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지표로 설정하기는 한계(광역시·도)</li> </ul> </li> <li>○ 시행계획 수립시기의 적시성 관련(광역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계획 수립시기가 너무 빠름, 지자체 예산편성 이후 1월 정도에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li> </ul> </li> <li>○ 자원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시급성은 알지만, 자원 등의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군)</li> </ul> </li> <li>○ 단기적 시각에서의 복지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기틀마련과 과급효과 분석필요(광역시)</li> <li>○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대책 강구 및 생산적 복지정책 지향(광역시)</li> <li>○ 저출산 고령사회의 피부체감도가 낮아 실질적인 사업구도 방향 교육이 필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단순히 아기를 많이 낳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타 실, 과와의 협조 어려움(군)</li> </ul> </li> <li>○ 새로운 대책 마련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보완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시)</li> <li>○ 획기적인 정부지원(셋째아 대학등록금 지원 등)등이 필요함(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이 완벽하다고 해도 실질적이고 과감한 투자 없이는 성공이 불가피(시)</li> </ul> </li> <li>○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성격상 당면한 현안업무에 밀려 직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음, 간부조직의 관심을 제고시켜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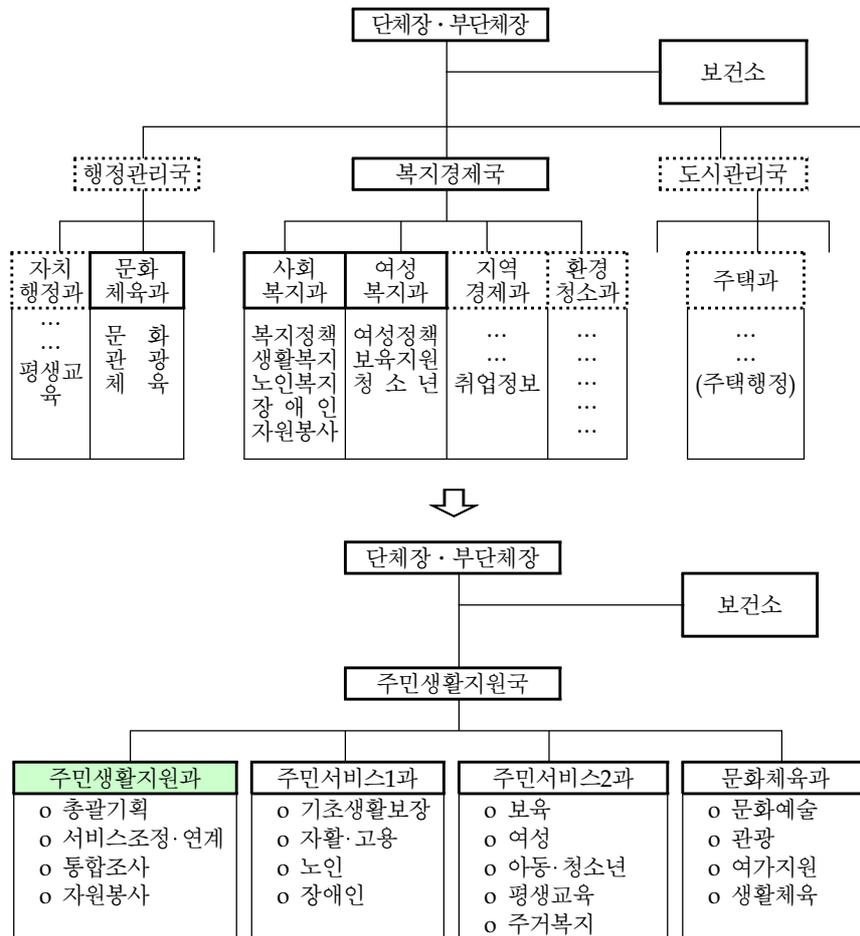
####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 개편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업무효율화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민생활서비스체계의 재편안을 보면, 대도시형 본청기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주민서비스과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일반구, 중소도시형 본청기구, 국제 미운영의 시군구 본청기구 등은 대동소이하다([도 4-1] ~ [도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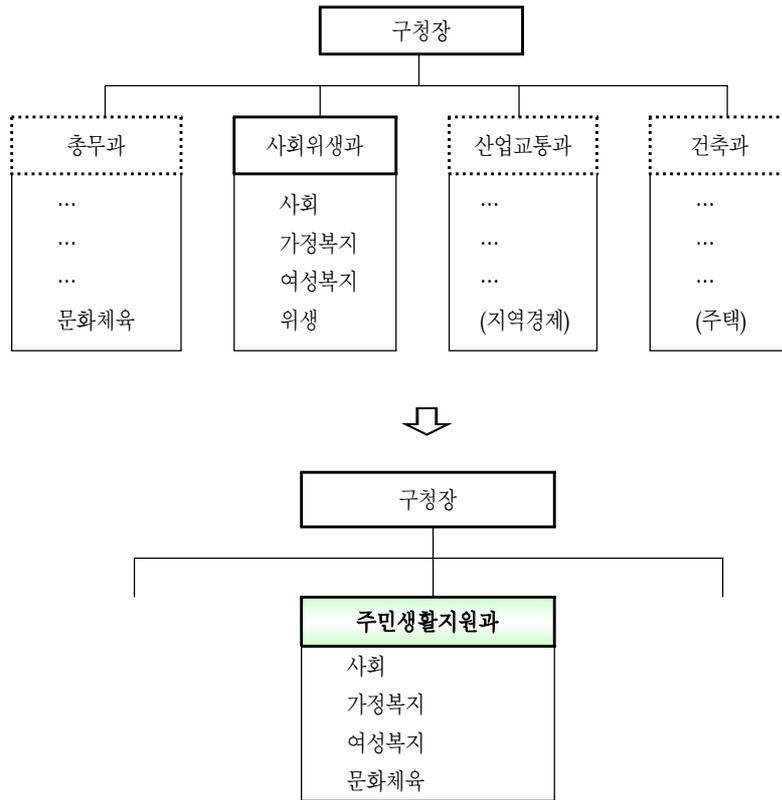
먼저, 대도시형의 경우, 현행 국 중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이외에는 타 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청소과를 운영하는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는 각각 재정국과 도시국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개별 실·과에서 수행중인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되, 단, 보건업무 전체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에서 제외하고, 추후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과 또는 담당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 또는 담당 전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담당의 일부 인력이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과 인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인력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한 이후 기존 담당이 담당으로서 존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담당과 통·폐합(시군구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 1명이 주민생활지원기능과 함께 다수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사무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하되, 인력의 재배치 여부는 자율결정하고, 자원봉사기능 등 주민생활지원기능과 유사한 기능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총괄기획, 서비스연계 등 강화·신규기능과 통합조사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리고 각 기능별 조직규모, 기구 명칭, 사무분장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문화관광국·평생교육과 등 특정기능을 대규모 조직으로 운영하거나, 특수성이 있는 시군구는 자체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기능을 강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주거복지서비스기능 강화 등이다.

[도 4-1]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대도시형 본청기구 개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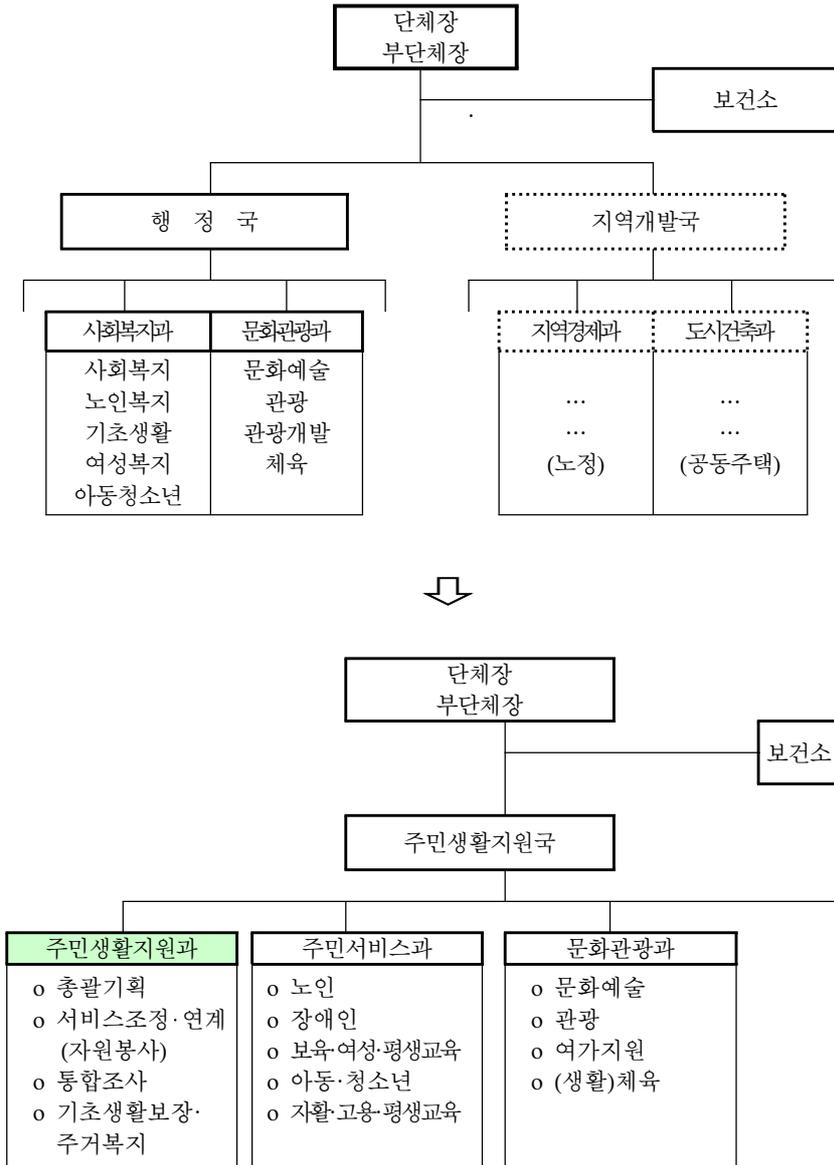


[도 4-2]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일반구 기구개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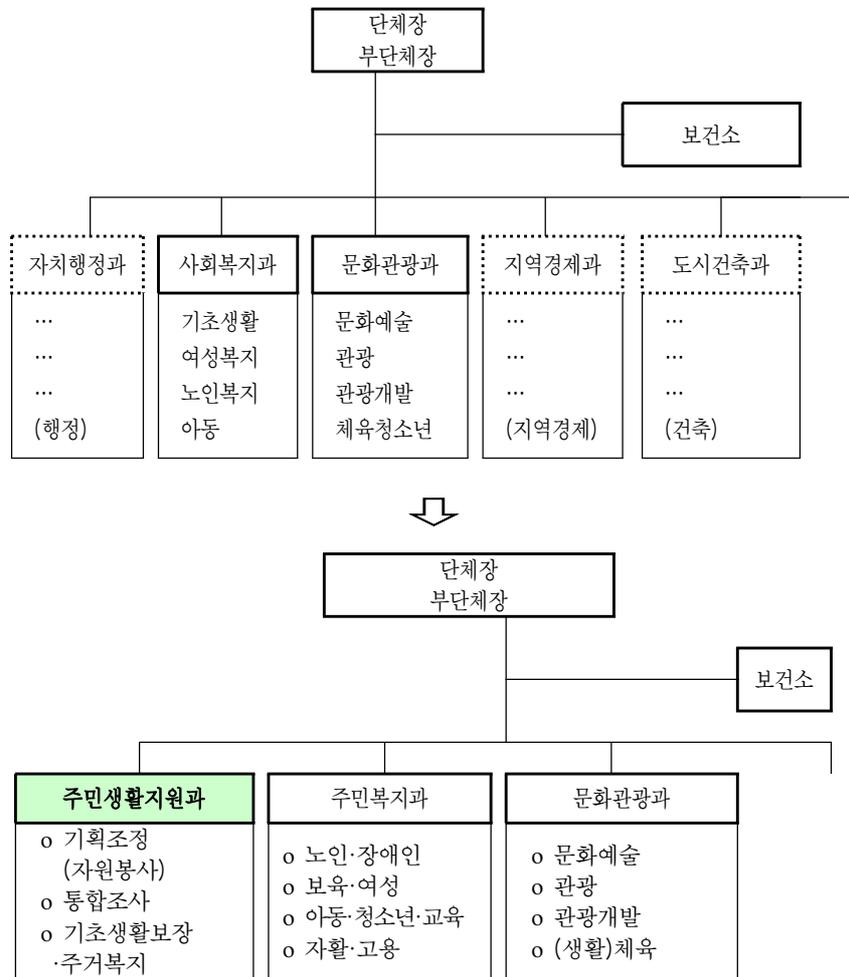
두 번째의 중소도시형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3~4 담당 범위내에서 기구 확대 등 기구 개편은 대도시형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국 이하 시·자치구에서 주민생활지원기능만으로 단독적인 국을 운영하기에는 국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2국 운영의 시·자치구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기능 이외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 설치를 허용하고, 3국 지역은 가급적 주민생활지원기능만으로 국을 편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유사기능 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도 4-3]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중소도시형 본청기구 기구개편 예시)



세 번째로 국제 미운영의 시군구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은 설치하지 않으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직제에서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설치 및 3~4담당 범위내에서의 기구 확대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기능의 주무·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직제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타 과에 대한 총괄기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 4-4] 주민생활서비스체계 개편안(局制 미운영 시군구 본청기구 기구개편 예시)



## 5.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사례분석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고령화현상이 일찍 찾아온 국가이다. 고령화 사회가 지난 1970년도에 도래하였고, 1994년도에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하고자 지난 1995년도에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을 근거로 하여 고령사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대책 내용을 참조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도를 기준으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지방정부의 조직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시마네(島根)현과 고령화율이 가장 낮은 사이타마(埼玉)현의 행정조직체계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보면, 고령자정책과 관련한 특정 국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담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이점을 열거한다면, 고령화현상의 심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노인계층의 인구를 유입하거나, 출산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마네현에서는 건강복지부 청소년가정과내에 소자화대책추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사이타마현에서는 별도의 대책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청소년과, 아동안전과, 자녀양육지원과 등과 같이 여러 과에서 소자화대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5> 참조).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의 조직구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구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시마네현과 가장 낮은 사이타마현내 시 중에서 각각 1개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즉, 마츠에시는 고령화율이 22.2%(2004년)인 반면에 사이타마시는 14.7%로 전국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도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 도시를 비교해 보더라도 소자화 및 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한 특정 국이나 과를 설치, 운영하지는 않고, 관련 여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6>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특성을 찾아본다면, 일본에서는 소자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6월에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을 제정하였고, 각 도도

부현 및 시정촌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 과나 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도 양 현에는 남녀공동참획과가 있고, 양 시에는 남녀공동참획과(마츠에시)나 남녀공생추진과(사이타마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4-5〉 일본 광역지자체의 조직체계 사례비교

시마네 현 (2004년 인구고령화율: 26.7%)	사이타마 현 (2004년 인구고령화율: 15.5%)
정책기획국 정책기획감실 비서과 홍청홍보과 통계조사과	시스템조정실, 전자서비스추진실, IT기획과 계획조정과, 개혁추진실, 거점정비추진실 행정감찰간 홍청홍보과 현정정보센터, 통계과
총무부 총무과 인사과 재정과 세무과 관재과 영선과 소방방재과 소방방재과 원자력안전대책실	입찰기획실 정책총무과, 문서과, 행정관리과, 총무사무센터 인사과, 학사과, 직원과 재정과 세무과, 특별징수대책실 관재과 영선과, 설비과 소방방재과, 현민방법추진실, 위기관리과
지역진흥부 지역정책과 시정촌과 정보정책과 교통대책과 토지지원대책과	지방분권지원과 시정촌과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과 토지수정정책과
환경생활부 환경생활총무과 환경생활총무과 NPO활동추진실 환경생활총무과 남녀공동참획과 환경생활총무과 소비생활실 인권동화대책과 인권동화대책과 인권개발추진센터 문화국제과 자연환경과 환경정책과 폐기물대책과	현민소비생활과, NPO활동추진실  남녀공동참획과 인권추진과  문화진흥과, 국제과, 국제스포츠대회실 온난화대책과, 수환경과, 미도리자연과 환경정책과, 청공재생과 폐기물지도과, 화학보안과, 자원순환추진과

〈표 4-5〉 계속

시마네 현 (2004년 인구고령화율: 26.7%)	사이타마 현 (2004년 인구고령화율: 15.5%)
<p>건강복지부 건강복지총무과 지역복지과 의료대책과</p> <p>건강추진과 고령자복지과 청소년가정과 청소년가정과 소자화대책추진실 장애인복지과 약사위생과</p>	<p>복지정책과, 장수사회정책과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감사과 보건의료정책과, 감염증대책실, 국보의료과, 의료정비과 건강증진지원과, 개호보험과 청소년과, 아동안전과 자녀양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약무과, 식품안전기획실, 생활위생과</p>
<p>농림수산부 농림수산총무과 농업경영과</p> <p>농축산진흥과 시마네브랜드추진과 농촌정비과 농지정비과 임업과 삼림정비과 수산과 어항어장정비과</p>	<p>농업정책과, 유통판매추진실, 농산물안전과, 농업지원과 생산진흥과 농산촌매력조성과, 축산안전과 농촌정비과, 쌀조성개혁지원실</p> <p>삼림조성과, 목재이용추진실</p>
<p>상공노동부 상공정책과 관광진흥과 시마네브랜드추진과 산업진흥과 기업입지과 경영지원과 노동정책과</p>	<p>금융과 관광진흥실, 지역상공업지원과</p> <p>신산업육성과, 기업유치추진실, 창업기업지원과 산업거점정비실</p> <p>산업노동정책과, 약년자취업지원실, 노동자복 지과, 고용대책과, 직업능력개발과</p>

〈표 4-5〉 계속

시마네 현 (2004년 인구고령화율: 26.7%)	사이타마 현 (2004년 인구고령화율: 15.5%)
토목부 토목총무과 토목총무과 건설산업대책실 기술관리과 용지대책과 도로유지과 도로건설과 고속도로추진과 하천과 斐伊川神戸川대책과 항만공항과 사방과 도시계획과 하수도추진과 건설주택과	스태지움관리과, 공원과, 신도심사업조정과 현토지정비총무과  기술관리과 용지과 도로정책과 도로가로과, 시가지정비과 하천사방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총무과, 전원도시산업존 추진실 하수도과 건설업과, 현토지조성기획실, 개발지도과, 건 축지도과, 주택과
출납국	출납국
기업국	기업국
	병원국

〈표 4-6〉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체계 사례비교

시마네 현 마츠에 시 (2004년 인구고령화율: 22.2%)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시 (2004년 인구고령화율: 14.7%)
시장실 정책기획과 비서홍보과 정주지역진흥과 정보정책과 오토하시카와치수사업추진과	기획조정과 비서관, 홍보과 커뮤니티과 정보정책과, 시정정보과 시스템관리과
총무부 총무과 (정보공개실) 인사과 (복리후생실) 행정개혁추진과 방재안전과 (원자력안전대책실) 국제교류과 인권동화대책과 남녀공동참획과	총무과 인사과, 급여과, 후생과, 인재육성과 개혁추진실 국제교류과 인권정책추진과 남녀공생추진과
재정부 재정과 관제입찰과 (건설공사감리실) 세무관리과 시민세과 고정자산세과	재정과 계약과, 공사검사실 수납대책과 시민세과, 세제과 고정자산세과, 용지관재과, 청사관리과
산업경제부 상공과 기업유치추진과 농업기획과 농림과 수산진흥과	경제정책과, 노동경제과 산업진개추진과 농정과
관광진흥부 관광기획과 관광문화진흥과	문화진흥과
시민부 시민활동추진과 시민과 보험연금과	스포츠기획과 시민총무과, 구정과, 교통안전과 국민연금과, 보험업무과

〈표 4-6〉 계속

시마네 현 마츠에 시 (2004년 인구고령화율: 22.2%)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시 (2004년 인구고령화율: 14.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과 자녀양육과 개호보험과 장애인복지과 생활복지과 건강추진과	보건시설준비실, 병원건설준비실 복지총무과, 감사지도과 자녀양육과, 보육과 개호보험과, 고령복지과 장애복지과 생활위생과 건강증진과
환경보전부 환경보전과 리사이클도시추진과 환경시설건설과 청소업무과	환경총무과, 환경대책과  환경시설과 폐기물정책과, 산업폐기물지도과
도시계획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지도과 공원녹지과 시가지정비과	오오미야북부지역복합시설건설준비실 도시총무과, 도시계획과, 도시시설과 도시정비과, 정비기획과 공원녹지과 시가지정비과, 개발조정과, 구획정리과
건설부 관리과 토목과 건축과 토지대책과 하수도업무과 하수도공무과	기술관리과, 도로계획과 토목총무과, 도로환경과 건축총무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영선과, 설비과 하수도총무과, 하수도재무과, 하천과 하수도유지관리과, 하수도계획과
	교통정책과 지하철7호선연장대책과 위기관리실 청소년과

## 제 2 절 조직체계의 개선방안

### 1.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 설치운영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실태 및 일본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을 실시하는 국이나 과가 어느 한 부서에서만 전담,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부 국이나 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 및 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의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모든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정 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대한 조직부서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서 조직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추진부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다만, 추진부서의 담당업무는 기본계획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기획, 조정 및 평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첫째, 기획업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에 충실하게 기반을 둔 사업내용을 개발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나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현상이나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연수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마련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둘째, 조정업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중복적인 사업을 제거하

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각 국·과 부서별 사업 내용의 업무를 사전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정하고,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재차 조정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을 지방정부로의 전달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락조정역할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진단평가업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사업결과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성과관리지표가 필요한데, 최근 중앙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성과관리지표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관리지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각종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을 통해서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사업의 비교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성과관리지표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반이나 특성과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4-7〉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의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에 기반한 사업개발</li> <li>○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분석 및 신규사업 개발</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담당자 연수교육 기획</li> </ul>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각 국·과 부서별 사업내용의 업무조정</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상담 자문</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중앙과 지방간 연락조정</li> </ul>
진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실적 평가</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비교 평가</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우수사례 평가</li> </ul>

[도 4-5]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의 위치: 예시



주: 이는 모든 관련국이 관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보기 보다는 TF형식의 관리본부를 두고 관련국의 관련업무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 설치운영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는 기본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 조정 및 진단평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 주축이 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체가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이고, 이는 공무원, 학계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체이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표 4-8> 참조).

첫째, 기획홍보지원으로, 이는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해당 지역내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지역실정에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단체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도 정부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정부정책에 호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사업소(우체국, 도로교통사업소, 한국전력 지방사업소 등등)에서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공공단체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반상회, 학부모회 등 조직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수교육지원으로,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수교육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차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유관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해당권역내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의 상호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한 세미나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장소제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진단평가지원으로,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실적) 제대로 진단,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고, 무리없이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사업을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평가방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방법, 사후실적을 제대로 진단평가하는 방법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추진조직체계 자체를 진단,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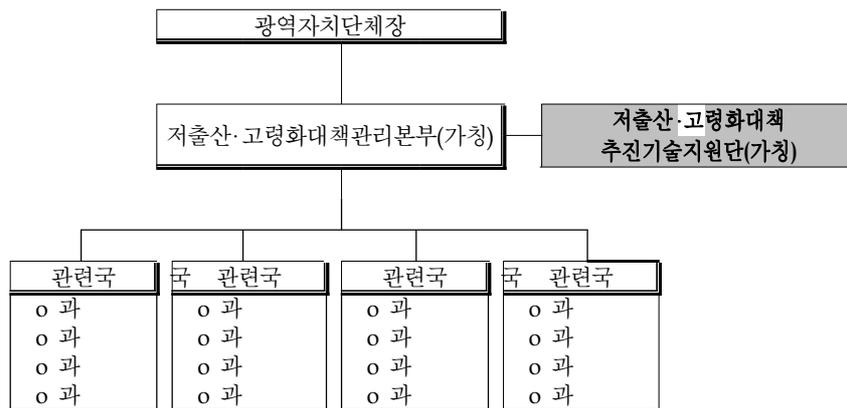
이러한 기술지원단의 조직체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도 4-5]와 같다. 이 조직

은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기술지원단은 해당지역내 학계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이들은 기술지원을 위한 연수교육 강사로도 활용되고, 기술지원을 개발하는데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 4-8〉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의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기획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개발 기술지원</li>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홍보 기술지원</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의 운영계획 작성</li> </ul>
연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권역내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대상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기술 연수교육</li> <li>○ 해당권역내 공공 및 민간단체 실무자대상의 저출산·고령화대책관련 사업 기술 연수교육</li> <li>○ 해당권역내 학계 및 실무전문가의 세미나, 간담회 개최</li> </ul>
진단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의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평가방법 기술지원</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추진과정상의 진단 및 실적평가 기술지원</li> <li>○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사업 추진조직체계의 진단 기술지원</li> </ul>

[도 4-6]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의 위치: 예시



## 제 5 장 결 론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된 국가적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제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고,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획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문지에 응답한 지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거나, 비록 관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 또는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응답한 지자체 일지라도 기본계획에 대한 관심도가 지자체의 지역적 및 인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따라서, 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와 관내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뒤따라야 하겠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의 추진조직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축되어 있어야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가칭)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관련된 국 및 과의 업무를 기획·조정·진단평가 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기술지원단(가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계획관련 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석 외,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 권오철·김필두·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김동배·김유심, 「한국 노인복지 행정체계의 개선방향」, 『연세행정논총』, 제27집, 2002, pp.87~113.
- 김상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진단」, 『동국논집』, 제15집 인문사회과학 편, 1996, pp.219~237.
- 김상호·박성원·주상현,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과정의 경험과 함의」,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2004, pp.259~279.
- 이경호·김근세, 「중앙행정기관 조직진단의 경험과 함의」, 『한국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2006, pp.257~284.
- 이창균·서정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조성한, 「조직진단-피드백기법의 공공관리에의 활용」,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1999, pp.91~110.
- 주재복·김필두·고경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 주재복,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최신용·강제상·김선엽·임영제, 『행정기획론』, 박영사, 2005.
-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진단』, 대영문화사, 2002.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편람』, 2006.1

## [ 부 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설문조사표**

2006. 10

이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협력아래, 지난 7월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시행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합한 조직체계를 제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시도명	시군구명	소속부서
(            )광역시	(            )시(            )구	(            )국(            )과(            )계)
(            )도	(            )군	

--	--

--	--	--	--

--	--	--	--	--	--	--	--

- ※ 문의사항: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기획평가팀
- ※ 제출기한: 2006년 11월 17일(토)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3-1.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업무가 하나의 새로운 조직체계로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3-2, 3-3로 가시오)
- (2) 현재 업무수행방식으로도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 3-3로 가시오)
- (3) 기타 (\_\_\_\_\_)

**3-2. 하나의 새로운 조직체계로 통합된다면, 국(局) 또는 과(課)단위 중 어느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局)
- (2) 과(課)
- (3) 기타 (\_\_\_\_\_)

**3-3. 하나의 새로운 조직체계로 통합된다면, 국(局) 또는 과(課)단위 중 어느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보건소
- (2) 본청(시·군·구청)
- (3) 기타 (\_\_\_\_\_)

**4.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1) 자세하게 알고 있는 편이다
- (2)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편이다.
- (3) 거의 알고 있지 못한 편이다.

**5.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못한 편이다. (⇒ 5-1로 가시오)

**5-1.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존 사업내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 (2) 인력부족으로 시간이 없어서
- (3) 기본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 (4) 기본계획의 내용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잘 몰라서
- (5) 기타 ( \_\_\_\_\_ )

**6.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까?**

- (1)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현존 조직(담당부서)을 활용하고 있다. (⇒ 6-1, 6-2로 가시오)
- (2)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6-3으로 가시오)
- (3)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일부는 신규 전담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6-3으로 가시오)
- (4) 모든 세부시행계획을 전담하는 신규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단, 임시적 TF팀 조직은 제외함). (⇒ 6-3으로 가시오)

**6-1. 현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기존의 조직체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 (2) 조직개편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 (3) 전담 TF팀이나 전담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 (4) 기타 ( \_\_\_\_\_ )

**6-2. 그렇다면, 향후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당분간은 구성할 계획이 없다
- (2) 구성할 계획이 있다

**6-3. 조직을 개편한 경우, 그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1)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에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 (2)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과 보건소에도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 (3)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은 제외하고, 보건소에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 (4) 기타 ( \_\_\_\_\_ )

7.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6-1로 가시오)
- (2) 그렇지 않다

**7-1. 보건소 조직의 활용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기본계획의 모든 시행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 (2)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 저출산관련 모든 대책업무에 한하여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 (3)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 고령화관련 모든 대책업무에 한하여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 (4)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도, 저출산관련 일부 대책업무만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 (5)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도, 고령화관련 일부 대책업무만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내용별 지자체의 담당부서 실태

기본계획 사업내용 (※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은 새로마지플랜2010을 참조하시오)	1. 담당부서 국(局)명 (복수응답 가능) (※ 보건소에 해당하는 경우도 기입하시오)	2. 담당부서 과(課)명	3. 담당부서 담당, 팀명	4. 담당부서 유형 ① 기존 조직 ② 별도의 전담조직 ③ 담당부서 없음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① ② ③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① ② ③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① ② ③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① ② ③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① ② ③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① ② ③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 ② ③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① ② ③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① ② ③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① ② ③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① ② ③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① ② ③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① ② ③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② ③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① ② ③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① ② ③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① ② ③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① ② ③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① ② ③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① ② ③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① ② ③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① ② ③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② ③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① ② ③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① ② ③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② ③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① ② ③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① ② ③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 ② ③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② ③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① ② ③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① ② ③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① ② ③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① ② ③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 ② ③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② ③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② ③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① ② ③
1. 전략적 교육홍보				① ② ③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① ② ③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b>기본계획 사업내용</b> <small>(※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은            새로마지플랜2010을 참조하시오)</small>	<b>1. 귀 지자체의            실정에서 느끼는            사업의 중요도</b> ①매우 중요하다 ②중요하다 ③별로 중요하지 않다.	<b>2. 기존 사업과의            일치도</b> ①매우 일치한다 ②유사하다 ③전혀 유사하거나 일치하지않는다	<b>3. 사업담당에 필요한            투입인력(직원)수 및            투입시간량</b> <small>(※대영역수준에서            기입하시오.)</small> ①일 필요한 투입인력(명) ②1일 1인당 필요한 투입시간 (시간)
<b>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b>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① ② ③	① ② ③	—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① ② ③	① ② ③	—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① ② ③	① ② ③	—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① ② ③	—
2.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2-2.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① ② ③	① ② ③	—
<b>II. 고령사회 삶의 질향상 기반구축</b>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
1-1.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① ② ③	① ② ③	—
1-2.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② ③	① ② ③	—
1-3.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① ② ③	① ② ③	—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① ② ③	① ② ③	—
2-1. 노후 건강관리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2-2.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① ② ③	① ② ③	—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① ② ③	① ② ③	—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b>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b>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② ③	① ② ③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
1-3. 외국인력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① ② ③	—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① ② ③	① ② ③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 ② ③	① ② ③	—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② ③	① ② ③	—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② ③	① ② ③	—
<b>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b>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전략적 교육홍보	① ② ③	① ② ③	—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① ② ③	① ② ③	—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상의 애로사항

(1) 기존 조직체계와의 관계측면

---

---

---

---

---

---

(2) 인적구성측면

---

---

---

---

---

---

(3) 예산배분측면

---

---

---

---

---

---

(4) 기타

---

---

---

---

---

---

